第289回國會
(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8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0年4月29日(木)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13.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7. 國家保衛立法會議法附則第4項의規定에의한解職公務員의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계속)
21.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審査된案件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 2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 2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 8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김성조・신상진・손범규・유성엽・김성태・강석호・허원제・차명진・조진래・이한성・김을동・이종걸 의원 발의) ····· 8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8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김성회・김우남・나경원・노철래・박대해・박상은・서종표・송영선・안규백・양정례・유기준・원희룡・이명수・정진석・최구식 의원 발의) ····· 17
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7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7
9.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19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9
12.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13.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성조・박보환・배은희・신상진・여상규・황진하・김광림・백성운・원유철・강성천・박대해・최인기・차명진・정갑윤・이상득 의원 발의) ····· 20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31
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31
16.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31
17. 國家保衛立法會議法附則第4項의規定에의한解職公務員의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현경병의원 대표발의)(현경병・이사철・정해걸・안홍준・이화수・송훈석・공성진・정갑윤・권택기・김용태・진수희・김무성・유재중 의원 발의) ····· 31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32
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32
2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3
21.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3
2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유승민・유성엽・정해걸・주광덕・홍정욱・이명수・이한성・신학용・노철래 의원 발의)(계속) ····· 33
13.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성조・박보환・배은희・신상진・여상규・황진하・김광림・백성운・원유철・강성천・박대해・최인기・차명진・정갑윤・이상득 의원 발의)(계속) ····· 35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 36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 36

(15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유선호 오늘 법률안 상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긴급한 사유를 감안해서 국회법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라서 오늘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15시03분)

○위원장 유선호 의사일정 제1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7일 제7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석 위원님!

○張倫碩 委員 지난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해서 우리 법사위원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 부처로부터도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법의 시급성이나 또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인들의 긴박한 사정을 감안하면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선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張倫碩 委員 1항에 관해서는 처리해 주시고요, 2항에 관해서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을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호 아, 1항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지난번 토의가 이 법 연관성이 대단히 깊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항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張倫碩 委員 그것은 한번……

지경부장관! 1항부터 처리해도 문제 없겠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두 법안이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 본 결과 2항은 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으니 지경위나 법사위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통상 당국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1항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2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토의를 거치는 그런 방향으로 법사위가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이춘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지금 1항의 법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고 2항의 법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그래서 일명 말하면 SSM 규제법안 그리고 대기업들에 대한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한테 양보하겠다라고 제안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2개가 지금 세트로 가는 법인데 도대체 1번 유통산업발전법은 통상 협력의 압력이 없고—장관 말대로 하자면—2항은 통상 압력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추후 더 논의하자……

도대체 1항은 왜 통상법상 그 제한이 없고 2항은 왜 있다라고 합니까? 그것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2개를.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지금 1항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전통시장 그리고 전통상점가 그것을 포함해서 그 주변 한 500여m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통, 문화, 역사성 이런 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통상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면 그런 웨이브(waive)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통상 당국에서는, 힘들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생법에 의한 기타 지역에, 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사업조정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는 전통, 문화, 역사성 이런 보전 논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상 마찰의 소지가 더욱 강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통상 당국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지식경제부장관님!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이춘석 위원 지식경제위 때 민생 현안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됐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때는 왜 그 얘기 않고 여기 와서 지금 그 얘기 왜 합니까? 언론이나 이것 보면 실컷 '우리 중소기업 보호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왜 먹습니까? 그래 놓고 막상 이렇게 문제되니까 대기업……

1항은 SSM, 2항은 대기업들, 이마트와 직접적으로 상관있는 것 아닙니까, 롯데마트나? 왜 건건마다, 법 통과할 때마다……

그러면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위원회에 나가 가지고 그 얘기 말씀하셔 가지고 통과 못 하게 해야지 왜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왔다가 법사위에 와서 또 잡습니까, 이렇게? 그것도 당당하게 지식경제위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통상부장관 얘기 들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얘기입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저는 지금도 개인 소

신은, 또 지식경제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은 두 법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그렇다면 그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으로서는 달리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제가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춘석 위원 이 법에 대해서는 WTO 서비스 협정 제16조 위반 및 기업의 경제활동상 자유를 제한한다 하는 얘기는 매번 이 법 개정할 때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재래시장 살려야 하고 중소기업 살려야 한다, 정부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주장하고 있고 야당도 주장하고 있으면서 막상 법 만들려고 딱 올라오니까 또 여기서 발목을 걸면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서민, 중소기업, 재래시장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지경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부대의견으로서 지식경제부에서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에서 부담하는 점포로 한정하도록 그 대상도 제한해서 통과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4월 임시국회의 민생법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인 SSM법, 규제하겠다고 국민들한테 다 설명하고 중소기업한테 다 설명하고 다 해 놓고서는 여기 와서 마지막 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2개 부분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정말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 버리면 6월 달 또 선거 있고 9월 달 정기국회 있고, 이것은 정부나 국회가 다 우롱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선호 조순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舜衡 委員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논의가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여러 위원들 의견을 다 종합을 해 가지고 두 법안 중에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처리를 하고 또 하나 법안에 대해서는, 상생법안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그렇게 강력히 통상 분쟁 문제를 제기하니까 조금 더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하고 결론을 내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지식경제부장관께서 이것은 같이 가는 법안이다, 이것 하나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같이 처리해 달라, 그래 가지고 위원장께서도 지식경제부장관이 간곡히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강경하게 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 여유를 가지고 정부부처끼리 의견 조정을 하고 오늘 결정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유선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확합니다.

○趙舜衡 委員 그런데 오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가지고 한 법안만 처리하고 한 법안은 조금 더 논의해도 괜찮다고 그러십니까? 처리하면 다 같이 처리해야지 어떻게 하나만 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다고 그러고 지식경제부장관 입장하고 개인 입장하고 분리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 입장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닙니다. 저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趙舜衡 委員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지금도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趙舜衡 委員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만일에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저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지 않으냐 그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趙舜衡 委員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법안은 처리하고 또 하나는 더 논의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니,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홍일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일표 위원 지금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지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중기청장입니다.

○홍일표 위원 오늘은 왜 통상교섭본부장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유선호 제가 이미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불허했습니다.

○홍일표 위원 불허했어요?

○위원장 유선호 예.

○홍일표 위원 통상교섭본부에서 누구 나오신 분 있어요?

어제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실은 이게 조순형 위원님께서도 일단 외교통상부에서 법 체계상의 문제, WTO와의 관계, 우리가 통상국가로서 거시적으로 봐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제2소위로 넘겨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상교섭본부장의 얘기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자기들이 볼 때에는 그 법도 문제가 있지만 그 법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통상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법에 대해서는 너무 자기들로서는 커버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법이 지경위에서 넘어왔지만 이 법에 관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법 체계상의 문제는 바로 WTO나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법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이 일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데, 어제 저도 지경부장관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열화와 같은 염원도 있고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먼저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은 그런 통상 문제가 있다니까 분리해서 나중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을 오늘 장윤석 간사께서 제출했던 것이고 지금 지경부장관께서는 지경부 입장은 그렇지 않지만 굳이 법사위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장관 입장이 틀리다 아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내용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노철래 위원님.

○노철래 위원 어제 그제였던 것 같은데 지금 통상본부하고는 그 이후로 대화는 아직 해 본 바가 없습니까, 했는데 아직 의결 조율이 안 된 겁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대화를 했습니다.

○노철래 위원 했는데도 아직 조율이 안 된 건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도저히 통상을 담당하고 있는 협상 담당자로서 그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산업발전법만 이번에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어떻든 통상본부하고는 1안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1항은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 부분은 최대한 설득을 해서……

○노철래 위원 하여간 그것은 양해하겠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것은 합의가 된 겁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렇다면 일단 주무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당초 약속했던, 이게 오늘 통과시키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선호 예, 2개 법을……

○노철래 위원 그렇다면 1안부터 우선 통과시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추후에 더 의견 조합을 하는 걸로 하십시다.

○위원장 유선호 이렇습니다. 2개의 법이 그동안 통상 규제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완화된, 양보된 2개의 안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함께 입법 과정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두 법이 통째로 여러 가지 완화에 대한 양보의 질과 양을 함께 논의해 왔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민주당 쪽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이런 문제가 제기되려면 이것이 초기에 분명하게 나왔으면 조금 부작용이 덜할 텐데 지금 전국의 상인들이 그동안 입법 과정을 꾸준하게 추적해 오면서 지금은 두 법에 대한 입법 기대가 최고조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것을 급격하게 바꾸면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날지 제가 그 점을 조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만약 분리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법에 대해서 양당 간사께서 언제쯤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떤 대략의 계획이라도 제출되지 않고서 이렇게 갑자기 막판에 입법 방향을 바꾸는 게 제 생각에 조금 그런데요.

○우윤근 위원 제가 입장을 좀……

○위원장 유선호 말씀해 보시지요.

○우윤근 위원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제 개인 입장도 포함해서요.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을 벌여온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오늘 갑자기 또 최근에 갑자기 논란이 있었던 법은 아니고 오늘 외교통상부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들이 이미 충분히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 간에 또 정부 간에 충분히 논란을 벌여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와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과정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교통상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내 영세한 업자들, 상인들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이 국회에서,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시간을 끈다고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묘책이 없어 보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도. 어차피 마지막 선까지 양자의 문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 마찰 또 하나는 국내 상인들의 보호, 이런 문제가 충돌해서 더 이상 조정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결단을 해다오 하는 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기다린다고 해서, 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을 따로따로 분리 처리한다는 것은 법의 실효성에서도 전혀 적절하지 않다, 또 이 법으로 인해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 얘기를 들었더니 차라리 그럴 바에 2개를 다 통과하든지 아니면 2개를 다 보류해서 한꺼번에 통과해다오 이런 요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난번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자,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시키자. 법사위원회에서 체계·자구 때문에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들을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시간을 끌고 논의한다고 해서 더 좋은 묘안이 나올 것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논란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은 종지부를 찍어주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선호 장윤석 위원님!

○張倫碩 委員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또 대·중소기업 상생법 이 두 법안을 처리 하지 말자 하는 의견은 여기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처리를 하지만 그러나 통상이라는 또 국익의 문제가 있어서 이 두 법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에 관한 것이고 상생법은 사업조정제 대상에 관한 법이어서 2개 법이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적용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상교섭본부로서는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EU와의 여러 가지 통상 문제를 고려하면 처리를 하되 적절한 시기 문제 또 통상교섭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회가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법사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되지 아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 견지에서 지혜롭게 점진적으로 시차적으로 적용을 해 나갈 수도 있다, 그것이 이것을 기다리는 여러 상인들에게도 그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정부의 의견도 감안했으면 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를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법은 법사위 이 자리에 그대로 계류시키고 저희들이 5월도 임시국회가 있을 수 있고 6월도 임시국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호 지금 장윤석 간사님 의견은 이것을 같이 처리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항을 일단 처리하고 2항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늦어도 다음 국회, 그것이 임시국회가 될 가능성도 있고,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는 데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쪽에서도 예를 들면 구체적인 처리 계획을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개략적인 목표가 있어야 상인연합회 쪽에서도 양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박영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영선 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는 같은 이유거든요. 같은 이유인데 1번은 되고 2번은

안 된다고 봤을 때 어떤 지적을 할 수가 있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대기업들이 2번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굉장히 여론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산업……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게 다 GATT와 관련해서,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건데 왜 1번은 되고 왜 2번은 안 됩니까? 2번은 SSM, 영세상인들 가슴에 무참히 멍이 들게 하는 마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대기업에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 2번을 다 한꺼번에 통과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골목상인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와 2번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의 문제점을 봤을 때는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약해 보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다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趙舜衡 委員 저도……

○위원장 유선호 조순형 위원님.

○趙舜衡 委員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두 법안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처리하면 다 같이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법안 다 유보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 회의에서 저는 두 법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무역에 의존하고 국가의 생존이나 국가 경제에서 무역과 통상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서 우리가 국제사회 또 WTO니 이런 데와 약속하고 조약 협정 다 체결한 것은 헌법에 의해서도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제가 사실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수용한다기보다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국익을 생각을 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토론 경과를 보면 대부분 위원들께서 대규모점포에 의한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의 피해 그런 것을 역설하시고, 저 자신도 지역구 의원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로 그치고, 그날 결론이 내일모레 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것이냐 또는 한 법안은 처리하고 한 법안은 할 것이냐 이렇게 하겠다고 위원장께서 결론을 내리셔서 저는 오늘 두 법안 다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고 나왔는데 오늘 또 어떻게 된 것이…… 지식경제부장관께서도 그날 그렇게 위원장께서 지금 원하시는 대로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 안 된다고 막으셔 가지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위원들께서도…… 글쎄, 물론 여러 가지 국익도 생각을 하고 또 집권당 의원들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크고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가지고…… 뭐, 그렇지요. 절대적인 입장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요, 저는 두 법안을 같이 처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통상 분규·분쟁은 정도의 문제지 두 법안 다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입법을 결심하면 말이지요,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회도 그렇고 협력을 해서 앞으로 통상 분쟁에 우리가 지혜롭게 역량을 동원해서 정말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셔야지, 지난번 회의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선호 홍일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일표 위원 우선 지난번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왔는데 오늘 못 나오게 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민주당 입장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충분히 들었으니까 오늘은 나오지 마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 보려면 그 사람 말을 들어 봐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그 사람 말을 듣고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WTO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체계상의 문제를 확인하려면 통상교섭본부장 얘기를 들어 봐야지요. 지난번에, 하여간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현재 사업조정제도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이번에 프랜차이즈점을 포함

시킬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이 이 법안 개정의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통상 협력,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

지금 통상교섭본부에서 누가 나왔어요?

○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장 김기환 다자국장입니다.

○홍일표 위원 김종훈 본부장……

○외교통상부다자통상국장 김기환 옆방에 지금 대기 중이십니다.

○홍일표 위원 잠깐 와서 얘기 좀 한번……

○위원장 유선호 허용을 할까요?

○홍일표 위원 예, 얘기 좀 들어 보고, 이것을 통과하려면 체계상의……

○박영선 위원 지난번에 다 들었어요.

○홍일표 위원 아니, 지난번에 들은 것은 일차고 최종적으로 하려면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으면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토론을……

○위원장 유선호 하여간 말씀을 끝내 보세요. 그 부분은 양당 간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통상교섭본부장을 마지막으로 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위원장 유선호 홍 위원님, 지금 교섭본부장을 불러서 얘기를 시작하면 더 논의가 길어지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보니까, 통상본부장의 논리는 지난번에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1번은 협상에서 돌파할 수 있고 2번은 협상이 더 어렵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밖에 여러 가지 상인연합회의 대단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먼저 처리하더라도 2번에 대해서 양당 간사가 예를 들면 어느 때까지는 처리한다, 약속을 좀 해 줘야 이게 진정이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당 간사께서 분리를 하더라도 이것이 큰 문제가 없게끔 단시간 내에, 또 장윤석 간사님 입장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일단 언제까지는 이것을……

○박영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저희 지경위 간사 노영민 간사한테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면요, 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같이 통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의를 해 줬다는 거예요. 합의 위반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한나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한나라당이 원하는 법만 통과하고 2번 법은 통과를 안 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지경위 간사 얘기는 열매만 따 먹고, 그러니까 협상할 때…… 그것은 굉장히 신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지경위 간사가 저한테 문자메시지 보낸 것에 의하면.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항 중에 우리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한나라당한테 합의를 해 주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서로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그러면 이 두 법을 제일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지경부장관께 미안하지만 좀 대기를 해 주십시오. 3번부터 하겠습니다.

---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김성조·신상진·손범규·유성엽·김성태·강석호·허원제·차명진·조진래·이한성·김을동·이종걸 의원 발의)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시35분)

○위원장 유선호 의사일정 제3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존경

하는 유선호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최인기 의원, 변재일 의원, 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종합·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 획득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위치정보 주체와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위치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한 경우에는 법원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별정통신사업자에게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직접적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개정안 제50조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당이득 취득행위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행 허용되어 온 간접 접속 방식이 이 법 소정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당이득 취득행위는 검토보고서 제3면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소정의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거나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통신사업자 간에 민사적 부당이득 침해 금지에 국가가 나서서 고액의 과징금과 형벌로 규제하는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밖의 개정법률안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성 위원!

○이한성 위원 한나라당 이한성 위원입니다.

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안이 두 가지인데 변재일 의원님 안은 29조2항이 되고 최인기 의원님 안은 29조의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바로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정보라는 것은 아동이 유괴됐거나 그런 경우를 상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소방관서에서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유괴·납치로 인해서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유괴범의 수사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수사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구조의 형태는 대개 경찰관서에서 검찰에 영장 허가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다시 법원에 청구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그렇고 형사소송법이 그렇고.

지금 전문위원 어디에 계시지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영진 이것은 소방서에서 하던 긴

급구조 차원에서만 보았는데요……

○이한성 위원 그것하고 약간 다르지요, 차이가.

○전문위원 이영진 예.

○이한성 위원 이것은 소방서에서의 그런, 위치 파악보다는 범죄 수사의 단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강제수사 이런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상 법원 허가 절차를 따라서 아마 검찰이 신청을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이런 구조를 취해야 되지 않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영진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게 된 것은 현재 성폭력이라든지 납치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서 지금 현재 긴급구조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소방청, 소방서하고 해경만 돼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그런데 소방서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대개 신고가 경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하고 긴급구조에 한해서 경찰에 위치추적권을 달라는 요청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동 성폭행 등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소방청에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경찰에 이런 위치추적권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법안에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에 한하도록 돼 있고 또 본인이나 아니면 실종아동의 보호자에 한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확대되면 수사권의 일종으로, 확대까지 가겠지만 일단 구조 단계까지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요청이 들어왔는데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는 사전적 절차를 필요로 한다면 이 법을 다시 논의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도 경찰에서 오남용은 방지돼야 되기 때문에 법원의 사후 승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조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사후 승인절차를 거쳐라, 사후 승인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사 단계로 들어간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그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것은 수사 절차 일반에 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절차가 우회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하는 요소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지금 이 법안의 또 다른 내용 중의 하나가 납치가 돼 있는데 납치범의 감시하에서 도저히 긴급구조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긴급구조요청을 하는 경우까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게 긴급할 때는 우선 긴급하게 위치 추적을 하고 사후 영장은 통상 검찰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청구하는 그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예,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 절차에 따라서……

물론 체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영장 청구할 때도 검찰에 신청을 해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절차를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글쎄요, 뭐……

○위원장 유선호 박민식 위원이 먼저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박민식 위원 제가 정말 제일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이 변재일 선배님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한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하고 그렇게 충돌되는 게 제가 언뜻 듣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한성 위원님 지적은 사전적으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안 30조2항에 보면 사후 통제 방법으로 경찰서에서 바로 법원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헌법의 영장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통상의 관례에 따라서 경찰에서 검찰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도록, 그러니까 '신청'이라는 용어와 '청구'라는 용어가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한성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2소위로 보내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통상의 다른 조항에 맞추는 것이 옳겠다……

○이한성 위원 여기서 고칠 수 있습니다.

○박민식 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예, 좋습니다.

사전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긴급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노철래 위원님 마저 말씀 들어볼게요.

○노철래 위원 조금 전 설명 중에 제가 약간 의문나는 부분이 있는데 사후에 영장으로 오남용을 단순히 규제하는 그런 정도지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만일에 그러면 그 영장 신청하기 전에 경찰에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용, 어떻든 자기네 편의에 의해서 해 놓고 나서 영장 신청했을 때 영장에서 기각해 버리면 그거 뭐……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위급한 성범죄나 감금이 되었든 납치가 되었든 이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편의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영장해서 기각하면 그것으로 끝났다, 그런 정도면 면피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지금 만약에 영장의 심사 과정이라든지 법원의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경찰 내부에서 징계 문제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소방관서의 경우에는 또 이와 유사한 경우에 사후적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사전적·사후적 조치가 전혀 없고 긴급구조 활동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저는 그래서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 어떤 보완,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그런 것, 어떻게 보면 뻔히 알면서도 수사 편의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오남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이거에요, 사후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정보주체의 긴급구조 요청이 없거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자의 긴급구조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치정보를 요청해서 악용했다면 그 법에 따라서도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놓아 두는 것입니까? 지금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런 사후 처벌 규정이나 보완 규정을 안 둡니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다른 법령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서도 경찰이 이런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이런 정보를 획득해서 남용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법에 의해서 정보주체의 요구와,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용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타 법에 의해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노철래 위원 그래서 이 휴대전화가 너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오남용이 빈발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위치정보법의 39조(벌칙) 조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 가지고서 '29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거나 법원의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이 벌칙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해당 경찰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만 규정을 두지 지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처벌 규정을 안 둔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아닙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처벌 조항입니다.

○노철래 위원 거기에 두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예.

○노철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호 아까 이한성 위원님이나 박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 통제 조항 30조2항에 경찰이……

변 의원님,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서 법원 사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저희 상임위에서는……

○위원장 유선호 긴급성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전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사전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박영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영선 위원 문제는요, 검찰에는 경찰의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위치정보가 추적이 되면 이게 검찰에 정보가 넘어가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경찰의 위치정보가 넘어가면 경찰에도 넘어가게 된다?

○박영선 위원 검찰에 넘어가게 돼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사후적으로요?

○박영선 위원 사후적으로든 동시적으로든, 왜냐하면 검찰이 지휘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를 검찰이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이게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목적 이외의 경우로 사용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하여튼 현재 우리가 제출한 법에서는 긴급구조 요청이고 정보주체—본인입니다, 정보주체는 본인입니다—본인과, 만약에 본인이 실종되었을 경우에 실종자의 보호자에 한해서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나 본인이 실종된 경우 보호자 요청이 없는데 경찰관이 물론 위치정보를 달라고 했을 때 위치정보 회사에서 주지도 않겠지만, 그런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박영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전화 내역 조회 그거 1580만 건에 해당한다는 것 그 보도 보셨지요?

그게 어떤 사람 하나를 전화내역 조사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법원이 영장을 허락을 해 주면 그 시간대에 그 사람 하나의 전화 내역을 보기 위해서 서버 전체를 열어 주는 것 아니에요?

서버 전체를 열어 주면서 이게 오남용되고 있는 것인데 위치 추적도 마찬가지지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지국 수사라고 그럽니다. 기지국 수사의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의한 서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가지고 기지국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형사소송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이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 있는 기지국, 그것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에서 접속한 이동전화의 전화번호와 그 소유자의 명단을 확인해 갖고 경찰에 넘겨 주는 그런 것이 2008년 이후에 수천 건이 작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공된 전화번호나 가입자 명단이 한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게 1580만 건이에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통신비밀보호법상에 편법적 이용 아닌가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저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문제삼고 있습니다마는 왜 법원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떼어 주라는 그런 허가서가 나갔는지 그런 관계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법 갖고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가 만약에 된다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지금 만약에 그런 것이 걱정된다면 경찰이 긴급구조 목적으로 위치 정보를 획득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이 법안에 명시된 대로 법원의 허가만 받도록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기록이 남나요? 제가 보기에는 사후적으로 기록이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이미 위치 추적 다 해 놓고 이것을 사후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선호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견제와 균형인데 다른 기관이 끼어듦으로써 오남용이 더

확대될 것인지 아니면 보다 견제 쪽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지금 위원들께서 못 하고 계시니까 뒤에서 좀 전문적인 보좌를 해 주시고요, 또 이한성 위원 한번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홍일표 위원님도 한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유괴·납치로 인한 피해자를 긴급하게 구조하기 위해서 이런 위치정보를 획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죄수사의 초동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수사 일반의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박영선 위원께서는 여기 검찰을 한 단계 거침으로 해서 검찰에 정보가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뭐 경찰에서 하는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검찰 거치는데 그렇게 정보가 흘러가는 그 걱정만 하고, 검찰은 그러면 남의 정보만 빼먹고 도와주지는 안 하고 방해만 하느냐 이렇게 국가기관 간에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이것은 영장의 일반 절차입니다.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우선 검찰에 신청해서 스크린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타당하다, 법률 요건에 맞다 그러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영장제도 일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께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보가 새는 문제 이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선호 뒤에 나와 계신 분 누구신가요?

직책과 성함을……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황철증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네트워크정책국장 황철증입니다.

○위원장 유선호 한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장 황철증 방금 박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통신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이 안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발의한 안이라기보다 최인기 의원님, 신상진 의원님 그리고 변재일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들을 모은 통합 대안입니다.

2005년에 이 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에 한해서만 위기에 빠진 개인의 위치정보를 조회·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바 이번에는 경찰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사회의 변화를 감안한 것이라고 보고 대신에 경찰에게까지 확대하더라도 경찰이 개인의 위치정보, 그 개인도 일반 개인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위기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오남용을 어느 정도 제어해야 된다는, 허용해 주되 오남용을 제어해야 된다는 이유로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는데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가 조금 결여되어 있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검찰을 거쳐서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고 그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찰과 법원의 사후 통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선호 검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남용을 견제하는 데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전문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은……

○박영선 위원 아니, 이게 순수한 의미로만 쓰인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법이 악용될 소지에 관한 것을 지금 타진하는 거니까, 지금 하신 답변이야 순수한 의미로야 무슨 법인들 못 만들겠습니까?

○위원장 유선호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은 처음에 그 부분을 생각을 않고 법을 만들었는데 오늘 지적이 되어서 생각을 해 보니까 검찰을 거치는 것이 보다 견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박영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찰을 거치라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제가 말씀드리면 박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남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위치정보법에 보니까 '경찰관서는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

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자가 누구냐, 요청일시 및 목적이 뭐냐, 위치정보 사업자로부터 받은 정보의 내용이 뭐냐, 또 개인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이런 것을 갖다가 기록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관서가 기록을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여지껏 경찰관서한테 위치정보 획득권을 주지 않은 이유가 경찰관서에 의한 오남용 문제 때문에 긴급구조기관인 소방방재청하고 해양경찰청에만 주었던 것인데 최근의 사태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만 의존해서는 긴급구조에 한계가 있겠다 해 가지고 경찰관서에 최초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번에 처음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찰관서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경찰관서를 긴급구조기관처럼 그대로 둔다면 현재 소방방재청이나 해양경찰청이 하는 것처럼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긴급구조활동을 끝내고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에 보고한다든지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전혀 하지 않는데 경찰관서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긴급구조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범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활동으로 즉각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법원의 사후 승인은 받도록 해서 견제를 하자 이런 것들이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 과정에서 검사가 중간에 한번 검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법제사법위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긴급구조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적 조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그러면 결정하겠습니다.

박민식 위원과 이한성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30조2항에 사후 통제,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여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박영선 위원 저는 그거는 반대해요.

○위원장 유선호 지금 형사사법 체계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주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박영선 위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위원장님, 경찰 측의 의견을 한번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선호 예. 오셨나요, 오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예.

○위원장 유선호 예, 말씀……

○박영선 위원 잠깐, 제 얘기를 들으시고서 얘기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아, 들으신 다음에……

○박영선 위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행법이 사후적으로, 통신 자료에 관한 것을 조사했을 때 사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1580만 건씩 지금 통신자료 내역을 들여다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사후 조치가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법을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1580만 건씩 지난 1년 동안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는 전화를 도청하거나 아니면 통신자료 내역을 다 감지를 했는데 왜 그 사후 조치가 안 됩니까?

그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 누구 손들어 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위원장 유선호 자, 경찰 쪽에서 나오셨으면 이게 왜 검찰에 신청을 안 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이유를 설명하시고……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양성철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 생안국장 양성철 치안감입니다.

지금 검사의 신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법안이 된 것은 정부안에서도, 저희들이 긴급구조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만 수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행정작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도 국무회의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안이 제출됐었고, 그래서 그다

음에 이게 실제로 실종 아동이고 납치이고 유괴이고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중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호 사전에 그 행정작용 단계하고 수사로 이전할 때 그 단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나요, 시기적으로?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양성철 명확히 구분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많은 요구 건을, 약 30만 건 이상의 신고 중에서 대부분 약 90% 이상이 일반 긴급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사 개시 단계에 나가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일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유선호 자, 홍일표 위원님, 중간적 입장에서 명백히……

○홍일표 위원 아니, 이것 오늘 해야 돼요? 시간도 지금 부족한데……

이게 긴급구조나 이런 것이면 굳이 검찰 안 거치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형사사건 수사나……

지금 오남용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데, 긴급구조이고 실종자 수색 이런 거야 뭐, 굳이…… 괜히 검찰 거쳐서 시간만 더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유선호 지금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입법 방향에……

○홍일표 위원 아니, 그러면 2소위에 넘겨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자고요.

○이한성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홍일표 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한성 위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박영선 위원 중요한 문제예요.

○위원장 유선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홍일표 위원 그러면 2소위에 넘기세요. 뭘 이것을 지금 여기서 굳이 하시려고 그래요?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고치실 거라면 이것은 2소위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박민식 위원 잠시만요. 이것……

○위원장 유선호 자, 박민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민식 위원 지금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 누구……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양성철 생활안전국장 양성철 치안감입니다.

○박민식 위원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구조하고 지금 약취 유인 이런 것은 범죄 수사이지요?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양성철 그렇습니다.

○박민식 위원 피해자가 긴급히 요구하면 그게 구조의 성격도 있는 것이고 범죄 수사 개시의 성격도 있는 겁니다. 그게 구분이 실질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단순한 긴급구조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30조2항에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양성철 그것은 오남용 방지하기 위해서……

○박민식 위원 아니, 오남용 방지하는데, 긴급구조인데 무엇 때문에 굳이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고요?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양성철 아니,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의 방지를 위해서 사후 승인을……

○박민식 위원 아니, 일정한 절차라도……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정부나 법원이나 검찰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용, 그런 작용에 대해서 뭔가 승인이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긴급구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법원, 검찰 아니라 대통령한테도 아무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방서와 달리 경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사전적인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지금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면……

우리나라 헌법 13조에 보면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헌법 조문에 경찰은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고 검사는 '청구'라는 용어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심오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규정을 바로 경찰에서 법원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수사기관에는 경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별사법경찰관서가 많이 있지요?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양성철 그렇습니다.

○박민식 위원 관세청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법경찰관리가 있는데 수사기관의 주재자는 우리나라 헌법상에 검사로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그것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통일적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검사가…… 그러면 헌법을 바꿔서 경찰에서 바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거지요. 왜 검사를 끼워 넣습니까, 불편하게?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있는 겁니다.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양성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다만 저희들 입장은 실질적으로 긴급구조해 가지고 찾을 때까지는 수사 개시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그 전까지는 사실……

○박민식 위원 아까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을 고치는 것이 옳은 거지요.

○위원장 유선호 자, 최병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국 위원 듣다 보니까 너무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해 싸서 내가……

경찰관서에서는 직접 법원하고 승인을 받고 거래를 하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긴급구조이거나 간에…… 소위 영장이든지 이런 것을 법원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절차를 검찰을 통해 가지고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에.

이것은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니까 긴급한 행위를 하고 그것이 남용됐느냐, 어떠냐 하는 것을 가지고 사후에 내 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좀 오남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판단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직접 법원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국가의 행정절차를 갖다가…… 그러면 뭐 하려고 법원에서 받습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하지. 그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 할 때는 중간에 검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검사가 청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위원장 유선호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병국 위원 이것은 소위에 가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세요.

○위원장 유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5항은 2소위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영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선호 예.

○박영선 위원 의사일정 제4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별정통신사업자의 민사상 부당이득 취득 행위를 금지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위하여 국가가 나서서 과징금과 형벌로써 규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규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형벌의 최후수단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4항은 지금 통과시키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자, 4항과 5항을 2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전기통신사업법 문제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통신사업자의 설비를 빌려 가지고 특정 통신사업자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통신 부분에서 생각하는 서비스 기관 경쟁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됨으로써 설비기관 경쟁이 되지 않고 통신사업자의 설비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특정 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직접 빌리거나, 간접적으로 빌리는 경우에는 최소한도 그 사업자의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 사업자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자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거나 아니면 3자 계약을 하더라도 그 사업자와 합의해 달라, 이런 내용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

용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점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 안 돼요. 이것은 2소위에 한번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유선호 박영선 위원께서 꼭 반드시 2소위에 가서 심도 있게 보셔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변재일 예, 2소위 넘어가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김성회·김우남·나경원·노철래·박대해·박상은·서종표·송영선·안규백·양정례·유기준·원희룡·이명수·정진석·최구식 의원 발의)

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9.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10분)

○위원장 유선호 의사일정 제6항 김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유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부에서 제출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우선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변화된 콘텐츠 환경에 따라 콘텐츠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범정부적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실장에서 국무총리로, 위원도 7개 부처 차관에서 11개 부처 장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를 위하여 거래인증·품질인증 제도 및 콘텐츠 식별체계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동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순차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용어 사용례를 명확히 하였고, 의사일정 7항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8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개정하는 내용, 즉 심야 시간에서의 게임 과몰입 규제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9항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경미한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석 위원 몇 번까지 했습니까?

○위원장 유선호 지금은 6, 7, 8, 9입니다.

예, 이춘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8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먼젓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이춘석 위원 사실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온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고 규제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상에 일정 부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보면 지금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고 이런 규정들을 시행령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춘석 위원 그런데 이 규제하고 이런 규정들을 시행령에 두어서는 사실은 규제의 의미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2소위에 회부되어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형평성에 맞추어 볼 때 이것도 2소위에 되어 있는, 병합 심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게임에 대한 규제 부분도 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실제로 이 법안을 낼 때 여성가족부하고 또 의원님이 의원 법안으로 내셨는데 그것을 저희들하고 좀 충분히 미리 사전에 잘 의논을 했으면 아마 통합 법안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물론 저희들이 게임을 진흥하는 법안이지만 그동안에 조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난 부분이 몇 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게임 업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미 본인들이 규제하겠다, 그래서 이미 게임을 만들 때부터 본인들이 그런 것을 좀 걸러서 내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낸 법안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너무 절대적인 어떤 법이 되면 잘못하면 산업 자체가 좀 힘들어지고, 아니면 이게 외국 서버로 넘어가 버리면 또 실제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좀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그 두 법안을 잘 협의해서 그런 것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 합리점을 2소위로 회부시켜서……

○위원장 유선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8항을 제2소위에 회부해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하자는 의견에 장관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위원장 유선호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조금 더 여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오픈마켓을 저희들이 사이트상에 열어서 많은, 이 게임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그곳에 자유롭게 아이템을 올려서 거래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 오픈마켓 안에서 등급도 정리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시급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2소위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규제 관련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잘 해서 수정 법안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의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2소위원장께서는 좀 신속하게 이것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2.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17분)

○위원장 유선호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존경하는 유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에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각각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공공청사 등과 같이 지붕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그리고 하·폐수 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토록 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려되는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관계 부처, 전문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한 본 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존경하는 유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에 통합하고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등 기업복지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급업체 근로자도 도급업체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연간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입금으로 수급업체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사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념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로 전문위원 이금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안 제8조 제1항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빗물이용시설 미설치 시 이행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며, 중수도와 빗물이용시설 미설치자에 대한 과태료를 형평에 맞게 일치시켰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위임과 위탁 규정을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하나의 조문으로 합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첫째, 안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의 정의를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주관적 의사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는 등 명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같이 정의하는 등 수정하였고, 둘째 안 제10조제1항에서 노동부장관은 세무관서 등의 근로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공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부와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처음 개정안대로 '과세정보 등'을 '근로소득증명원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 및 자구 정리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김정훈·김성조·박보환·배은희·신상진·여상규·황진하·김광림·백성운·원유철·강성천·박대해·최인기·차명진·정갑윤·이상득 의원 발의)

(16시23분)

○위원장 유선호 의사일정 제13항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은 모두 13가지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지금 참석하신 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경호처 최찬묵 차장입니다.

○이춘석 위원 이런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면 정부가 직접 입법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물론 정부 입법 발의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지만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의견을 여당에서 동의한 상태에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엄청 제한하는 법률인데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입법 발의를 해야지 개별 의원한테 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에서?

자, 이 법을 보면 8조에 집회 및 시위의 제한 규정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다 금지시키고 있는데, 집회·시위를.

지금 이 법에서 특별히 우리 현행,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 법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외국 사례를 들어봤을 때 G20 정상회의 지역에서 원정 시위대에 의한 폭력적이고 과격한 시위들이 많이 일어났습

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행사 진행이 많이 제한을 받았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정 시위대에 의한 시위가 저희 행사 지역에서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예정 행사장인 코엑스 주변이 하루 15만 명 이상의 다중이 유동하는 장소이고, 다수의 상가라든가 입주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통팔달된 도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작은 시위라도 발생하면 정상적인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춘석 위원 차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0년도의 ASEM이나 2005년도의 APEC 정상회담, 기존에 있는 집시법 가지고 불가능했습니까? 특별히 그때…… 그 법으로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특별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APEC 같은 경우는 부산의 동백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진 장소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섬이라는 지형 때문에 다수의 집회라든가 시위 인원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소였었고 또한 그 당시에는 원정 시위대라는 그런 시위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의 ASEM 행사 때에는 9·11 이전의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양한 경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춘석 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춘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법 8조의 입법 목적을 보면, 현행 집시법의 다른 규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지 폭력 행위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보고 대처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현실 자체를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집시법이, 다양한 집회의 자유의 규제선을 지금 우리 집시법에서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 및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입법 형태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서 정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은 그 방법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는 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는 8조에 그런 위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2소위에 회부시켜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유선호 박영선 위원님, 먼저 말……

아, 조순형……

○박영선 위원 먼저 하세요.

○趙舜衡 委員 먼저 하세요.

○박영선 위원 제가 그러면 먼저 잠깐 할게요.

회의가 며칠날 개최되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박영선 위원 11월 7일부터……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11일부터 12일입니다.

○박영선 위원 예?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11일부터 12일, 1박 2일입니다.

○박영선 위원 11월 7일부터 11월 11일이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11일부터 12일입니다.

○박영선 위원 어?

○이춘석 위원 1박 2일, 11·12.

○박영선 위원 아, 11·12.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박영선 위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나라 중에서 이런 법 만든 나라 있나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현재 지난번에 3회가 열렸던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 때는 시법을 개정해서……

○박영선 위원 그 시법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 시법,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회의는 11일, 12일 이틀 동안 개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 시

행일이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일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무슨 수정안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나라에서 시법을 고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박영선 위원 이것은 지금 국회를 통과하는 법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법 고치신 것 있으면 시법을 좀 주세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제 기억에는 G20 정상회의 개최한다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런 법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킨 나라 없습니다.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 나라는 영미법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박영선 위원 아니, 영미법이고 무슨 법이고요……

아니,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집회와 시위를 못 하게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합니까?

○위원장 유선호 조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舜衡 委員 누구시라고 그러셨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경호처 최찬묵 차장입니다.

○趙舜衡 委員 차장, 경호처 차장이시라고?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趙舜衡 委員 그러면 정부위원이세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趙舜衡 委員 정부위원 아시지요, 정부위원?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

○趙舜衡 委員 정부위원 모르세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

○趙舜衡 委員 국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요. 처음이에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아닙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러면 정부위원이라는 개념을 모르세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국회법에 국무위원…… 국무위원들 장관들이지요. 출석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의안 심의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국무위원이 출석을 못 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으로 정부위원을 지명합니다. 정부위원은 차관하고 각 실·국장, 이렇게 지명을 해서 국회에 통보를 합니다, 정부위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는 '국무위원'이라고 명패가 있는데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양해 얻어 가지고 차관이나, 그러니까 정부위원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아까 이 법안, 문제가 없다고 그랬지요?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예, 자구만 정리를 했습니다.

○趙舜衡 委員 글쎄, 법안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거 설명하는 분은 문제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예.

○趙舜衡 委員 그것은 좀 검토 안 하셨어요?

위원장!

○위원장 유선호 예.

○趙舜衡 委員 이거 정부위원이 나와서 답변하고 그래야 됩니다.

○위원장 유선호 맞습니다. 오늘 제가……

○趙舜衡 委員 아니, 어떻게 해서 경호처……

아니, 나는 몰라서 물어봤어.

전문위원, 경호처장은 정부위원이에요, 경호처장?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趙舜衡 委員 알아요. 그건 압니다. 내가 그것 몰라서 물어봅니까?

정부위원이냐 아니냐 그거 물어보는데, 왜 내가 전문위원하고 주고받고 하는데 얘기를 하세요?

경호처장이 정부위원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법상……

○趙舜衡 委員 아니지?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예.

제가……

○趙舜衡 委員 그러면 이것은 대리인도 안 되겠

구먼. 정부위원이…… 차장이.

내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에 행안부장관이 나와야 돼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예, 맞습니다.

○趙舜衡 委員 행안부라는 게 모든 부처의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업무는 행안부가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아마 경호처가 주도한 것 같은데,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나와야지. 아셨어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알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행안부에서 나왔어야 돼요. 참고인으로 같이 나오는 것은 괜찮고.

그리고 또 경호처장이 나와야지 어떻게 차장이 나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경호처장은 행사일정 때문에……

○趙舜衡 委員 아, 물론 행사가 있지요. 대통령 경호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행안부장관이나 차관보고 해 달라고 그래야지. 이거……

○위원장 유선호 행안부장관이 나오실 때까지 법안을 보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趙舜衡 委員 아니, 그 얘기는 좀, 그 대신에 얘기는 좀……

○박영선 위원 위원장님! 이 법은 2소위로 보내야 됩니다.

○趙舜衡 委員 아니, 얘기는 좀 해야겠어요, 그 대신에.

○위원장 유선호 예, 말씀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박영선 위원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여기……

○위원장 유선호 말씀하세요.

○趙舜衡 委員 아니,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해 주셔서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정말 이런 법 만들어야 됩니까? 아무리 G20 정상회의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런 것을 갖다가 법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헌정사에도 그런 일이 없어요. 법률이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니, 여기 경호안전, 무슨 테러……

아니, 테러는 또 왜 삭제했어요, 또? 테러 삭제했다며, 테러? 아니, 왜 또 테러는 삭제를 해?

아니, 경호안전 누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철저히 경호안전하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대통령경호실, 검찰, 경찰, 국정원, 군 전부 다 할 수 있잖아요. 법이 다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되어 있어서 철저히 하면 되잖아요. 완벽하게 하면 되지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한 두세 달밖에 발효 안 하는 이런 법이 왜 필요해요?

나는 도대체 이런 발상을…… 이것 누가 하자 그랬어요? 누가 하자 그랬어요? 경호실에서 하자 그랬어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습니다.

○趙舜衡 委員 의원입법이라는 것 알아요. 그러나 의원들이 이런 입법을 할리가 없어요. 정부에서 누군가가 이것 좀 하자고 그래 가지고 한 거지. 아시지 않아요?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자, 무슨 대책회의에서 아마 얘기가 나왔을 텐데 누가 도대체 이런 얘기 했어요? 모르세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또 국회에서도 그 법안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趙舜衡 委員 공감한 것은 아는데 누가 시작을 했느냐고요? 누구 발상이냐고요? 어느 부처에서 하자 그런 거예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趙舜衡 委員 대통령경호처에서?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趙舜衡 委員 아니,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대테러 대책을 대통령경호실에서 합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경호 관련 부분은 경호처장이 경호안전통제단장이 되어서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趙舜衡 委員 경호는 모조리 경호실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趙舜衡 委員 아니, 경호실은 대통령 경호지, 대통령 가족하고. 물론 정상들이 참석을 하니까 관련은 있겠지.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는 행사인데 당연히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국정원장 전부 다 관련이 되고 그러는 거지 왜 또 대통령경호실이 무슨 이런 것까지 하고 그

럽니까?

정부위원도 아닌데 사실 이것 자꾸 한다는 게 이상하고 그래서……

전문위원, 위원장께서는 워낙 바쁘시고 그런 것까지 다 못 하십니다. 우리 위원도 그렇고. 전문위원들이 정부위원이냐 아니냐 이런 것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명심하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렇게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명심하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이게 말이 됩니까? 경호처 차장이 어디 국회 상임위원회 나와 가지고 딱 앉아 가지고 말이야. 아무 양해도 구하지 않고…… 아까 양해도 구하지 않았어요. 경호처장 대리로 나왔다고 그 얘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도 안 하면서 말이야.

전문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하시라고요. 정부위원 명단 있어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정부위원 명단 있냐고요? 각 부처 정부위원 명단이 있어요? 없지요?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예, 없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것 빨리 구해 놓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구해 놓아 가지고 각 부처 정부위원 명단에 없는 사람은 거기 앉히지 마세요. 반드시 정부위원 임명 받고 국회에 통보한 후에 그런 사람들만 하도록…… 구태여 꼭 국무위원이나 장관이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쁘고 그러면 충분히 양해하고 정부위원들도 얼마든지 나와서 질문에 답변하고,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회법에서 정한 정부위원은 지켜야 된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趙舜衡 委員 어디 건방지게 대통령경호실 차장이 여기 나와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나 이런 것은 또 처음 봤어요.

너무 언짢게 들으시지 마시고요. 나가라고 해서 나오셨는데 너무 또 심하게 그러는 것 같기도 하기는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명심하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다음에 이 법안에 관해서는 아마 2소위에서 심의하게 될 텐데, 경호처에서 나오는 것은 좋아요. 같이 오는 것은 좋은데 행안부에서 오라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총리실에서 오든가,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위에서 심의가 있을 테니까.

○위원장 유선호 앞으로 전문위원들은 출석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먼저……

박민식 위원인가요?

○박영선 위원 제가 아까 했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유선호 박민식 위원 먼저 하십시오.

○박민식 위원 오늘 너무 많이 박영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잠시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하세요.

○박민식 위원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 지적은 국회 경험이 일천한 저로서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만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지만 외국 사례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런 국제행사를 하는데 미국은 또 영국은 이런 특별법을 만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또 검토를 해 주시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우리나라 국회에 보면 어제도 4월 본회의 처리안건 중의 27항에 보면, 아마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발의하신 법 아닙니까, 2012년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박영선 위원 그 지원……

○박민식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엑스포 무슨 법안, 국제경기대회 무슨 법안, 각 지역의 무슨 행사 하는데 솔직히 너무 많을 정도로 법안이 제출되었고 또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원법이고 이 법은 다른 법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비판은 공히 적용될 수 있다.

지금 차장님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지만 우선 제가 이 법안의 내용 중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이 가장 큰 문제가 쉽게 말해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뭔가 대단히 제한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박민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죽 보면…… 모든 집회·시위를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렇지 않습니다.

○박민식 위원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친목 이런 것은 전부 다 예외 사유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박민식 위원 또 제한하는 기간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최소한으로 줄여서 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행사기간 포함해서 5일로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박민식 위원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 37조에서 말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고민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저희들도 물론 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일단 의견을 제시했고 또 의원입법 발의 과정에서 입법 전문 조사관들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식 위원 이런 것 한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어찌되었든지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행사를 제대로 치러서 외국사람들이 올 때 대한민국의 위상을 좀 과시하는 것도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박영선 위원 말씀하세요.

○박영선 위원 피츠버그 시 조례를 바꾸었다는 것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집회뿐만이 아니라 이 법을 보면 경호구역 안에서의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경호안전구역 안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정상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경호안전 활동에 협조하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들의 통행의 자유도 지금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칙 조항에 이 법이 2010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0년 9월 1일부터는 G20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주변의 통행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이 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법은, 제 상식적으로 알기에 G20 개최한다 그래 가지고 특별법 만들어서 국민들의 집회를 제한하고 국민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이런 나라 있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법 시행은 9월 1일부터 언급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안전 활동을 하는 것은……

○박영선 위원 아니, 법이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법은 9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적용이 되지만……

○박영선 위원 글쎄, 적용이 되지만 안전 활동은 나중에 가서 한다 그러면 법을 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만들어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안전 활동 내용을 축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박영선 위원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11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열리면 서울시 조례를 고쳐서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회의장 주변 반경 몇 m의 통행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지 어떻게 국회가 특별법을 내 갖고 국회를 통과하는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국민들의 통행과 집회를 제한을 합니까, 9월 1일부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이 법이 상당히 여야 간의 간격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법이 현재 예를 들면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그런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제2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한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이한성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G20 국가에도 가입하고 또 회의주재국으로 이렇게 참 우뚝 선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유치한 세계적인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또 그 과정에서 사회가 매우 안전하다…… 정말 또 불상사가 있으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참 신경 쓰이는, 한편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매우 조심이 되는 그런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경호실에서 총괄하시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이런 법이 없으면…… 지금 집시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한이 없이, 지금 정확한 규정도 없고 야당의 반대로 지금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이 없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그냥 금지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4월까지 어느 법이…… 10시부터 6시까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대안도 없고 그냥 위헌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어떤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현재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협조로 집시법이 개정도 못 하고 있는 판에 어느 정도 집회를 갖다가…… 적어도 안전한 회의를 마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이게 될는지 모르지만 야당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과잉금지다 또 침해 최소한의 원칙을 벗어났다 이런 지적을 어떻게 극복하고 빨리 법을 통과시킬 것인지 이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집시법이 지금 개정되지 않는 바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저는 그 점을 우선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장윤석 위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張倫碩 委員 이 법이 국회운영위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발의한 법안에 관해서 민주당 측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100%는 아니지만 민주당 측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수정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제시하신 문제점의 70, 80% 이상 반영해서…… 70, 80%인지 재 봐야 될 터이지만 그렇게 된 것으로 듣고 있고 다소 민주당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줄로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긴급성,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속히 처리를 해서 경호 당국으로부터 준비에 착수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경호의 문제와 테러 방지의 문제는 동전의 앞뒤 아니겠습니까? 결국 경호라는 게 테러의 방지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문에 또 법 이름에 테러 방지 또는 테러라는 용례를 씀으로써…… 아마 민주당 쪽에서 주장한 걸로 압니다. 이 법의 전면적인 운영에서 좀 유연하게 가져가자 해서 그 점도 아마 받아들여서 수정이 된 것 같고요.

또 집시법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원안에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아시는 대로 체육, 학문, 예술,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등 현행 집시법 15조에 해당하는 집회는 허용이 되어서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종교생활, 문화생활, 말하자면 이 G20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치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는 그런 입법을 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안에는 보시다시피 국방부장관이 테러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인력 배치와 장비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민주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방부장관이 인력 배치, 장비 운용하는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경찰력만으로도 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이 법으로서 담보하자 하는 뜻이어서, 이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면 다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좀 큰 틀에서……

이 법의 논의 과정에서 또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조금 소란 있었던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 이 정도의 여야 간의 의견을 수렴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어서 법사위에 넘어왔으니 특별히 체계에 관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이 법안을 오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합니다.

○위원장 유선호 자, 주광덕 위원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하시고……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차장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경호안전구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 경호안전구역이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해서 국민의, 시민의 일반 교통통행권마저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경호안전구역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현재 경호안전구역은 2㎞권 내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광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로부터 반경 2㎞ 범위, 이렇게 예상하면 됩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 정도로 저희는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경호 환경이……

○주광덕 위원 아니, 그 후에 경호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반경이 더 축소되거나 더 확대될 수는 있지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이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일단 이 법안을 성안하면서 상정했던 경호안전구역은 G20 정상회가 개최되는 장소로부터 반경 2㎞ 범위 내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서울에서 개최되게 되어 있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주광덕 위원 그러면 서울의 전체 우리 시민이 한 1000만 명 조금 더 된다고 볼 때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을 출입하는 서울시민은 전체 우리 1000만 명이 넘는 시민 중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숫자의 시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주광덕 위원 그런데다가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질서 유지 등의 그런 어떤 안전조치나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때도 정말 경호안전의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제한된 경호안전구역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맞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한이나 그것이 아니라 특정 아주 제한된 장소에서의, 그것도 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케이스에 한해서만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거나 광범위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 무슨 어떤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일반적인 장소에서의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상당히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차장님 견해도 그렇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동의합니다.

○주광덕 위원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은 안보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불감하고 있는 불감증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그렇지만 외국의 외국인들이나 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많은 외국의 방문객이나 관광객도 있고 회의와 관련되어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호 및 테러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보다는 훨씬 우리의 그런 어떤 안보 상황에 대해서, 경호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제에 오늘 안타까운 영결식을 치렀지만 천안함 침몰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고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군부나 북한의 동향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지는 것이 상당히 지금 적대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표현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이러한 어떤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이것을 법안으로 성안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우리가 어제도 또 며칠 전에도 이런 유사한, 또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회의의 그런 어떤 규모나 비중이 더 적은 어떤 경기대회나 환경대회에 있어서도 특별법안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그 법안을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건국 이래로 가장 어쨌든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회의에서 우리 국

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외국과의 관계에서 보나 대한민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정상회의에 관한 경호 문제, 경호의 안전에 관해서 어떤 각별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외국 정상 내지 외국인들로부터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안 내용의 여러 가지, 저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만 아주 특별히 우리 기본권을 중대하고 심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 지적이 있고 하지만 또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오늘 논의되는 많은 이런 문제 제기가 충분히 논의되어서 야당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이 법안에 상당히 반영되어서 성안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지체하지 말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유선호 최병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순형 위원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최병국 위원 그래요, 이 법은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법을 제정하고 하면 정부에서는 제안설명도 충분히 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입법례도 연구를 좀 하고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법이 우리나라에 그 전에 시행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88년도 올림픽 때 저희들이……

○최병국 위원 그렇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최병국 위원 우리 올림픽 개최 시의 올림픽의 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이 있습니다.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있습니다.

○최병국 위원 이 법에 보면 평화구역 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도 못 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이 법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제를 하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맞습니다.

○최병국 위원 그러면 이러한 때에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올림픽을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라든가, 그래서 지금 이것도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고 이 회의 때문에 집시법을 제한한다 하는 그것만 부각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국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최병국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갖다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때도 아까 조순형 위원님도 적절히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차장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무위원이 나와 가지고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하세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알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최병국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 법은 그와 같은 법이 그 전에도 똑같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G20 정상회담 평화스럽게 개최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호 자, 조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舜衡 委員 아,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께서 마침 들어오셨군요. 나는 안 계셔서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랬는데, 아까 발언하시면서 민주당 위원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의도 있으시고 그렇다고 한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분명히 아까 이 법안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민주당 위원들만 언급을 하십니까?

○張倫碩 委員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趙舜衡 委員 아니, 여기 우리 위원회의 민주당 위원들 얘기 아니에요? 국회에서 말이지요, 아니, 우리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반이 그냥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소위 비교섭단체 위원, 여기 마침 노철래 위원이 한 분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외롭지는 않은데, 그 뭐 있으나마나 그냥, 어쩌다 말이나 좀 한마디 끼어서 하고 말이지, 그다음에는 그냥 뭐 잘 안 되면 양당 간사 협의해 달라 그러고 양당 간사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그러고, 그렇지요, 그렇게 느끼시지요?

○노철래 위원 예, 아, 그렇습니다.

○趙舜衡 委員 아 그 참,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담이고요.

저도 G20 정상회의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호상 문제라든가 테러 방지 이런 게 참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론 아까 또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께서 88올림픽의 특별법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든 88올림픽은 한 두 주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88올림픽 그 당시, 1988년 8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입니다.

○趙舜衡 委員 글쎄, 사실 그것도 조금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 선례라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든 이게 그렇다면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이삼일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례적이면 이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이 그렇다면, 아,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제안자인 의원은 여기 나와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을?

그것은 못 한다 할지라도 정부에서도 최소한 국무위원, 정 안 되면 정부위원이라도 나와 가지고 '정말 이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특별법안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납득할 만큼?

경호차장이 나와 가지고 혼자서 그러고 있고 말이지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오늘 처리하지 말고 2소위에 회부해서 한번 정부 측의 책임 있는, 국무위원이나 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그 꼭, 입법의 필요성 이런 것을 좀 듣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또 양당 교섭단체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나, 이 질의 순서라는 것 말이지요, 위원들 다 보시지요, 질의 순서 전부 쭉 나온 것?

거기에 보면 정당 소속이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양당 교섭단체 위원들은 '한나라당', '민주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노철래 위원하고 저는요 '비교섭'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도 다 정당 소속인데 정당 빼 버리고 그냥 '비교섭' 이렇게 해 놨더라고.

아니, 우리가 '비교섭'이면 다른 분들은 교섭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교섭'이라고 써야지. 그것 구분하기 위해서 '교섭 1', 한나라당이 '1'이고 민주당이 '2'고 그래야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러고 있어요.

여담이고요. 이게 좀 그래야 됩니다. 정부 측의 국무위원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듣고요, 그러고 처리하시지요.

○위원장 유선호 예, 제2소위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철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철래 위원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여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하나 드리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위하고 예결위하고 몇 군데 상임위를 해 보는데 법사위는 비교섭, 운영위에 가면 또 저한테 정당명을 표시를 해 주더라고. 또 어느 특위 가면 표시를 해 주고. 그래서 국회도 일정한 룰이 없는 것 같아요. 각 상임위에 따라서 교섭이냐 비교섭이냐 정당명을 표시해 주는 것 같아서 '아, 이것 일정한 룰이 없구나' 생각하던 차고, 그래서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괜찮겠고……

지금 G20특별법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위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야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사전에 어떤 방해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여야 위원, 특히 민주당의 박영선 위원이나 이춘석 위원이나 조순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얘기가 됐고 제기됐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수정도 됐고, 또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정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 부분 수용이 돼 가지고 상당히 조율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도 실제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들어 보건대 G20 정상회의를 유치해 놓고 또 우리가 테러 지원 대상에 상당히 위험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아프간의 미국에서 테러 요주의 인물로 정한 사람이 여권까지 위장해서 바꿔 가면서 17번이나 출입했다고 하듯이 또 우리가 주한미군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테러에 상당히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 50여 명 외 여타 들어오는 분들은 한 1만여 명 되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현재 약 1만 5000여 명 정도……

○노철래 위원 외국 정상을 수행하는 인원까지 한 1만~1만 5000명이 들어오는데 하여간 진짜 우리가 국격을 새롭게 높이는 차원에서 안전한 G20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법안이 나왔는데, 물론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그 자리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9월 1일부터는 기한도 너무 긴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 조순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극소수 야당들이 얘기할 수 있는, 또 의사 개진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제한돼 있고 해서 산발적으로 제한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G20 성공적 개최가 가장 우선이다, 그런 쪽에서 하여간 이런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치러야 된다는 그게 사실은 저도 공감이 됐어요.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바쁜 것도 같아요, 준비하는 데. 그래서 오늘 기한 정도를 좀 신축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는 게 우리가 안정적인 회의를 치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기서 문제 제기됐던 것 또 염려했던 것은 다 운영위에서 개진이 됐고 또 상당 부분 수용을 해서 그래도 근사치로 좀 다듬어진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기한 정도만 한번 조정을 해 보면 어떤가, 그래서 오늘 처리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선호 지금 일부 수정을 해서라도 오늘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것 논의를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걸 보류했다가 마지막 순서에 다시 한번 제기를……

○박영선 위원 질의가 있는데요.

○위원장 유선호 예, 질의하십시오.

○박영선 위원 여기 이 통행제한 또 집·시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전국적으로 되는 건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아까 말씀드린 경호구역 내에서만 지금……

○박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호구역 내라는 걸 좀더 구체적으로 어디를…… 그러니까 이 G20 정상회의 개최 장소가 어디예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현재는 코엑스로 선정돼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면 코엑스면 코엑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 이렇게 법에 명시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노철래 위원 2㎞권 내……

○박영선 위원 여기 없어요, 그런 말이.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현재는 2㎞권 내로……

○박영선 위원 예?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2㎞권 내로 돼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런데 법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것은 저희들 기본지침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박영선 위원 아니, 기본지침에 나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걸 명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법만 보면 전국적으로 9월 1일부터 10월, 11월 15일까지는 국민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집회도 못 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만약 그 경호구역을 저희들이 지금 2㎞든 몇 ㎞든 이렇게 사전에 지정했을 경우에 나중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불편요소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영선 위원 아니, 그렇지만 그 경호구역이라는 게 너무 애매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엔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에 대한 목적과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래야지, 이 법안을 한번 읽어 보세요. 법안을 읽어 보

면……

○張倫碩 委員 5조2항에 돼 있어요.

○박영선 위원 예? 5조2항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철래 위원 그런데 그게 명시를 하게 되면 사전에 노출돼 가지고 오히려 경호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張倫碩 委員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와 정상들의 숙소, 관련된 도로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또는 그 주변' 이렇게 돼 있어요.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몇 ㎞ 반경이라는 게 나와야지요. '그 주변'이라는 해석 자체가……

○張倫碩 委員 그런 건 경호 당국에 좀 맡겨 주시는 게 필요하지요. 이걸 다 해 놓으면……

○박영선 위원 왜냐하면 이 정부가 지금까지 신뢰 있는 행동을 했으면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항상 이런 걸 핑계로 해 가지고 국민을 옥죄잖아요.

그리고 아까 88올림픽 말씀하셨는데 88올림픽은 군사정권 시절이에요.

○張倫碩 委員 그 정도는 집행 당국에 맡겨 주시는 게……

○노철래 위원 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병국 위원 군사정권 때 88올림픽 안 했습니까? 아직 그런 말씀을 합니까?

○위원장 유선호 좀 이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토론을 한번, 재토론 한번 해 주시고……

○노철래 위원 그 부분은 경호지역을 사전에 못을 박게 되면 오히려 보안이 노출돼 가지고 작전상황에서 그게 더……

○박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호안전구역 내에 예를 들면 2㎞라든가 3㎞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위원장 유선호 자, 순서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음에 방향을 다시 찾겠습니다.

○최병국 위원 군사정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사정부 때에 올림픽 한 것은 그건 올림픽이 아닙니까? 군사정권 때 한 건……

○박영선 위원 아니, 군사정권이니까 그런 발상을 해서 법을 만들었지요.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6.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 國家保衛立法會議法附則第4項의規定에의한解職公務員의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현경병 의원 대표발의)(현경병·이사철·정해걸·안홍준·이화수·송훈석·공성진·정갑윤·권택기·김용태·진수희·김무성·유재중 의원 발의)

(17시14분)

○위원장 유선호 자, 의사일정 제14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6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7항 현경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호를 분리하여 법률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표현을 정리하는 등 모두 15가지 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선호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1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

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7시16분)

○위원장 유선호 의사일정 제18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9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후원회지정권자가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가 당내 경선과정 사퇴 등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던 것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잔여재산만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수를 중앙당은 종전 20인에서 200인으로, 시·도당은 종전 10인에서 100인으로 각각 확대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시 발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지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선호 예, 박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중앙선관위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사무총장입니다.

○박지원 위원 참 사무총장님이시지요. 미안합니다.

요즘 말이지요, 저도 언론 인터뷰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4대강 반대에 대해서 왜 시민단체나 종교계의 의사표명은 못 하게 하고 정부는 홍보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인가 어제 보니까 정부에도 자제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대구역에 가면 말이지요, 또 다른 데도 다 붙어 있어요. 이제 이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이라는 말을 안 쓰고 '4강'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선관위에서는 4대강과 4강 구분 못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반대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찬성이든 반대든 현 시점에서는 그것이……

○박지원 위원 그런데 4강 이런……

역에 말이지요, KTX 역에 하루에 수십만이 다니는 그런 곳에 붙어 있는 것 선관위에서는 못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어떻게 해서 종교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못 하게 하고, 시민단체…… 선관위가 그러면 안 되지요. 본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야당은 믿는 게 선관위하고 사법부입니다. 역대 선관위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 여기 나오셨을 때 그것 물었어요. '진짜 어떻게 한나라당 그러한 분이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가느냐' 그랬더니 저한테도 오셔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중립적으로 선관위를 과거처럼 모범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대강, 왜 종교계에서 하는 것은 못 하게 하고 말이지요, 시민단체에서 하는 건 못 하게 하고 정부는 하게 하고 방조하고, 그러면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어떤 단체나 정부의 행동을 다르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기준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말이지요, 저희 지역에서 '어떤 경우에도 저부터 법을 준수할 테니까 이번 지방선거에도 선관위가 철저히 단속해 달라', 제 스스로도 제보를 하고 고발까지 했어요. 이런 존경받는 선관위가 돼야지, 4대강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대구역에 한번…… 대구 선관위에 물어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그 홍보물……

저는 공권력이 말이지요, 선택적으로 적용되면 국민이 억울해합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야당한테는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고, 왜 정부 여당은 하게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는데 대구역 등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연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기선 예.

○위원장 유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1.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유승민·유성엽·정해걸·주광덕·홍정욱·이명수·이한성·신학용·노철래 의원 발의)(계속)

(17시22분)

○위원장 유선호 다음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부가 제출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정부가 제출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신 장윤석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張倫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장윤석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내용 중에서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 등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동산·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법안입니다.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증감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담보권자에게 현황조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또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공동담보 배당,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등의 규정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법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그 밖에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

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등기특별회계의 기간을 2017년까지 7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차세대 등기전산화 사업의 추진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수용자가 수용개시 전에 피수용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확인의무 등을 규정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 이를 피수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로 수정하였고,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호 장윤석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법무부장관께 현안이니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관께서도 거기 오신 걸 봤습니다마는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천안함 영결식장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백원우 우리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장례방해죄로 기소가 돼서 오늘 결심을 한다고 그래서 참 착잡한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오늘 천안함 영결식장에서 유족들이 이명박 대통령님께 굉장한 항의하시는 것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제가 뒤쪽에 있어서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박지원 위원 저도 그렇게만 봤어요. 그런데 거의, 현장 TV인지 중계 TV인지는 모르지만 그 장면을 한 번도 안 보여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대통령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건 장례식 방해죄가 해당 안 될까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제가 민노당 대표 의원님한테 항의하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 항의하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무튼 그러면 저희는, 민노당 대표께 항의하는 것은 방해죄가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글쎄, 그것은 뭐 그렇게……

○박지원 위원 대통령께 항의하면 방해죄가 되고 야당 대표한테 항의하면 방해죄가 아니냐 이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굉장히 나는 오늘 그래서 말이지요, 저는 그걸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백원우 의원 재판정에 가니까 검사…… 그 공판검사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같은 성격의 영결식장에서 백원우 의원은 장례위원이자 상주 같은 분인데 '사죄하라' 그랬다고 해서 기소를 하고 또 오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분을 기소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조금 그것 이상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 말씀하시는 걸 아시겠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박지원 위원 우리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이지요, 한나라당 조 모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법원 판결의 지시가 있음에도 불복하고 명단을 공개했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동료의원이 공개를 했다 안 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소위 대통령 측근이라는 분들이 '조폭판결이다' 하는 등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 하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박일환 특별히 표명한 것은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왜 못 하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도 말이지요, 저는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국민이 참으로 훌륭한 게 법원의 최종판결과, 우리 정치인들도 선관위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불만 있지만 승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폭판결이니 이런 심한 얘기를 해도 사법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혹시 여당 눈치 보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박일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 것 아니면 뭐예요? 사법부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한나라당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법원행

정처장께서 기자회견한 것은 '왜 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거기 '조폭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일환 글쎄, 저희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말이 있었는지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만일 그런 사실 있었다면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박지원 위원 아이, 처장님! 대법관마저, 법원행정처장마저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본다고 하면요, 우리 진짜 실망합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어떻게 '언론보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일환 글쎄요, 보도내용이 사실인지까지는 저희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예, 그런데 보도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를 대표해서 '그러한 말씀은 지나치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박일환 예, 만약 그런 사실 있다면 지나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위원 좀 우리도 자제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치권이 여러 이해관계로 또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장관 계시고 뒤에 법무부·검찰 간부들 계시지만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칠 정도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부에 대해서는, 불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자제를 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저는 그 명단 공개에 대해서 가타부타가 아니라 그렇게 '조폭재판이다', 그것도 대통령 측근이라는 분들이, 집권 여당의 실세들이 그런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사법부의 견해가 나와야만이 국민도 '아, 그래도 우리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일이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일환 예, 저희들 법원이 항상 1심부터 국민의 신뢰를 100% 받는 그런 판단은 못 합니다마는 그 절차가 다 있고, 항소·상고에 의해서 다 저희들이 얼마든지 좋은 판결할 기회가 있으니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법원에 대한 판단에 대한 비판을 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환영합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좀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좀 삼가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도 원색이 지나친 원색이지요. 아니, 재판장한테 또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폭이다' 이런 것은 안 할 말 아니에요? 좀 그것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박일환 잘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김정훈·김성조·박보환·배은희·신상진·여상규·황진하·김광림·백성운·원유철·강성천·박대해·최인기·차명진·정갑윤·이상득 의원 발의)(계속)

(17시35분)

○위원장 유선호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3항 G20 정상회의 특별법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하고자 합니다.

노철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노철래 위원입니다.

13항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또 오늘 우리 법사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해서, 저도 조금 경호활동기간이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인데 제가……

이게,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국민의 염원이고 우리가 또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

다. 그래서 제가 이 경호 안전 활동기간을 좀 수정해서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 걸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5일간으로 수정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건 통과를 시켜줘야 또 안정적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호 노철래 위원께서 적용기간을 1개월 단축해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주영 위원 좋은 제안입니다.

○張倫碩 委員 좋은 제안입니다.

○위원장 유선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춘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張倫碩 委員 결국 부칙 1항을 그렇게 고친다는, 수정한다는 얘기이지요?

○위원장 유선호 예.

○이춘석 위원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에 정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신 G20의 성공적인 개최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 법이 적용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 기간을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노철래 위원님에는 동의합니다.

그대신 유보적으로 제8조에서 정하는 집회 및 시위의 제한부분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필요한의, 최소한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오늘 의결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므로 이것을 소수의견으로 부대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이 법률안의 8조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획일적인 금지규정으로서 방법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위반되어 헌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밝히고 이것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좀 정회했다가,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시 40분이니까 5시 45분에 속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계속)

○위원장 유선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추가로 하기 전에 그동안의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서, 특히 지경위 심사 과정에 대해서 관여를 죽 해 오셨던 지경위 조승수 의원께서 그동안의 상임위 여야 합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조승수 의원 조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선호 법사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 법사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식경제위원회도 사실 1년 넘게 이 법안과 관련한 논란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4월 23일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 법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은 사실 유통산업발전법이 허가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한은 지금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중소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힘들다라는 게 핵심 요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계속 강화된 허가제는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상생법에서 그나마 직영점은 물론이고 가맹점까지 그 사업조정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법안을 의결할 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저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또 법사위에서 한번 수정이 되는 파행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최경환 장관으로부터 분명하게 이번에는 정부 내 의견 조율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한 정부 내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밖에 또 상인들이 와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생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일각에서 외교통상부 등을 중심으로 워낙 WTO·GATT 협상에 의한 통상분쟁을 이유로 해서 이 법의 통과가 힘들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상인들이 양보하고 양보해서 지금 겨우, 그 두 법을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상인들도 동의를 하고 저희 지경위 위원들도 다수가 그렇게 겨우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통산업발전법뿐만이 아니라 이 상생법과 같이 반드시 처리되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상인들의 권리 보호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통상교섭본부장 출석을 요구하셨던 홍일표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나머지 궁금한, 특히 오늘 두 법을 함께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또 안 되는 장애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인 나머지 질의를 듣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범규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의 최고 핵심 내용이라고 한다면 전통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범위 내에서는 SSM 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아예 차단할 수 있게, 조닝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장관님?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법으로서 보호받는 중소 상공인이 뭐냐 하면 전국 1500개의 전통 재래시장 주변 그리고 39개 상점 밀집지역의 주변 상인들은 전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중소 상공인의, 모르기는 몰라도 70%는 아마 포괄될 것이라고 봅니다. 1500개의 재래시장과 또 39개 상점 밀집지역을 전부 다 조닝을 해서 500m 반경을 다 해주면 상당 숫자의 상인들이 보호가 되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런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조닝을 해서 보호를 하니까 대기업에서 볼 때는 자꾸 진입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외국기업과 체인, 그러니까 체인스토어, 이 가맹점들을 내세워 가지고 진입하려고 자꾸 하니까, 자기들이 못 들어가니까 가맹점을 진입시키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업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손범규 위원 사업조정 대상 범위에 여태까지 대기업이 내세운 체인스토어가 안 들어갔던 것을 이제는 포함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적으로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조닝을 해서 보호하는 것이고 그 조닝 밖으로 나간 지역에는 사업조정권으로 보호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패키지로 돼 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상인들을 지금 일단은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됨으로써 우선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얼마나 심각하기에 자꾸 이렇게 반대하는 건지 들어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선 유통산업발전법 하나를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고,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통과를 시킨 다음에 논리적으로 절단을 시켜 놓고, 그래서 수많은 상인들, 전통 재래시장 주변의 상인들을 일단 보호 범위 내로 들여놓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게 만사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저는 여전히 같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통상을 직접 담당해야 될 통상교섭본부장께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대로 유통법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기타 지역 보호를 하는 것을 법사위에서 정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따르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들으신 대로 이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하나 우선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심층적으로 듣는 게 도리지 이것을 부당하게 2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마치 2개를 다 통과를 안 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런 기도가 있으면 이것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선 유통산업발전법부터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호 박지원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김종훈 통상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미 FTA 관계 말이지요, 아직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하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최근에는 많이……

○박지원 위원 많이 진전됐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왜 반대를 하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아마 상당히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박지원 위원 정치적 배경……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 노조입니다. 특히 자동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후보 때부터 굉장히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대통령이 되셔서도 정치적으로 다른 측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척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교적 용어를 쓰지 못해서 죄송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노동자와 자국의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친서민, 서민정책을 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유통산업발전법만, 이것도 많은 재래 상인들, 중소 상인들이 양보를 해서 되고 있는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통상본부에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통상본부입니까?

최경환 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취임 초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친기업정책을 쓰셨지요? 그러다가 작년도부터 서민정책, 금년에 친서민정책 쓰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장관께서는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내각에 전달해라, 그래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형 슈퍼마켓 기업형 마트, 이런 게 들어오면 말이지요, 한국은행 통계 보셨어요? 한국은행 통계에 의거하면 대형마켓이 하나 들어오면 주위에 있는 500~3000개의 자영 가게가 망하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서민보호라고 하면, 더욱이 국회의원 출신인 지경부장관께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우선 통상 마찰이 두려우니까 유통산업발전법만 통과시켜 주고 우리 서민들, 그 어렵게 사는, 손이 퉁퉁 불어서 말이지요. 그 고통스럽게 사는 서민 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을 장관이 무시하고 말이지 '상생협력 촉진법은 좀 나중에 통과시켜 주라', 저는 이게, 장관 아니라도 국회의원으로서도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은행 통계와 제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저는 지난번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법안은 같이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같이 가는 게 좋다는 것을 그대로 하셔야지……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니,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라는 게 지경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부여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실제로 가서 막상 협상을 해야 되고 맞닥뜨려야 될

장본인이 통상교섭본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통과를 하게 되면 통상……

○박지원 위원 그렇다면 통상교섭본부장이 맞닥뜨려서 협상하기 좋게 불쌍한 서민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닙니다. 서민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박지원 위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업, 통상, 물론 수출을 잘하셔야지요. 그렇지만 중소기업, 중소상인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상인……

○박지원 위원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서민정책을 우선하는데 장관께서는 왜 현직 국회의원이고 장관으로서 대기업만 보호하려고 하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런 게……

○박지원 위원 나 같으면 차라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통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안을 시키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장관의 정답입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더욱더 절실한 쪽은 전통시장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준하는 상점가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운 계층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되는 게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고요, 나머지 수퍼마켓이다, 상점가가 덜 밀집된 데 이런 데 하는 것이 상생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위원 그런데 밖에 계시는 저분들도요, 재래상인 대표 전부 다 오셨어요. 장관이 지금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닙니다. 저는요……

○박지원 위원 이것도 필요하고 두 법이 같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박지원 위원 그러면 장관은 끝까지 두 개를 같이 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설령 통상본부장이 이러한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관은 정치인으로서 서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장관한테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통상본부장은 저렇게 주장하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법안은 같이 취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께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호 박민식 위원님!

○박민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발언을 하는데, 우선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죽 들어보니까 여당 야당 어떤 분들을 떠나서 이 두 가지 법안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이유는 논리적인 것은 아니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렇습니다.

○박민식 위원 논리상의 필연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렇습니다.

○박민식 위원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마 장관님도 아실 겁니다. 저희 지역구에 전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포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가면 거의 매번 갑니다. 가서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손이 퉁퉁 불은 70대 노인들, 할머니들한테 시금치 한 단 사면 2000원, 3000원입니다. 2000원, 3000원 사 주면 정말 환하게 웃음을 짓습니다. 정말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거기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발등에 지금 불이 탁 떨어져 있고 좀 약한 불이 있으면 어느 불부터 먼저 꺼야 됩니까? 어느 불부터 먼저 끄겠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 불부터 먼저 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계층이……

○박민식 위원 자, 하나 더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지금 천안함 사건이 있는데 지금 배가 가라앉습니다. 배에 승선인원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구해야 될 사람은 13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10명부터 먼저 구하고, 갑론을박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10명 먼저 구하고 빨리 가서 나머지 3명 구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한꺼번에 13명 못 구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13명 다 죽는 겁니다. 10명 먼저 구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것이 어떤 필연적인 논리의 문제 또는 법률적으로 어떤 큰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당

위원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반대입니다.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할 그런 시간에 빨리 10명 먼저 구하고 나머지 3명 구하자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민식 위원 짧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지난번 1차 회의 때 최경환 장관님하고 김종훈 본부장님과 충분한 토론을 했었고, 그때 지경부장관은 2개를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통상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유통법은 먼저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할 텐데 대·중소기업 상생법은 조금만 더 검토를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른 것인데 오늘 제가 통상본부장을 좀 부르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 법사위가 법률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게 본래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개의 법률 다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언론에도 SSM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글도 많이 썼고 지난번 대정부질문 하면서 총리한테 규제에 관한 논의가 부처 간에 정리가 안 돼서 총리한테 팀 구성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빨리 좀 처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지난번 1차 심사 때도 지금 조승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상인들 허가제까지 요구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많이 부족한 거다, 그러나 일단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됐다면 우선 이것부터 처리를 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교섭본부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2개가 다 통과될 경우에 어떤 통상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 법이 과연 우리 법사위가 검토해야 될 법률 체계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우선 들어보고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우선 이렇게 출석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하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축해서 유통법이라고 명명을 하고 상생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겠습니다.

유통법에서는 앞서 위원님들 이해가 계셨습니다마는 처음으로 1550개라는 재래시장을 점을 찍고 거기에 500m를 돌려서 조닝을 해서 소위 대기업 내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입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한을 하겠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50개라는 시장의 면면을 보면 등록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있고 기타시장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카테고리에 속하는 인정시장이 면적이 1000㎡입니다. 1000㎡면 300평이 채 못 됩니다. 저는 그런 집에 살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큰 집 마당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이 될 겁니다, 300평이면. 그게 다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시장은 거기에도 못 미치는 시장입니다. 그것까지도 다 전통시장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역사성과 전통성과 문화성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산출해 낸 개수가 전국에 1550개입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500m를 돌려서 그 안에는 못 들어간다 하고 조닝을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그 조닝이 대한민국 상권의 몇 %를 차지하느냐? 숫자마다 몇 가지 오차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대체로 30%~32%의 유통상권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 3분의 1이 빠지는 겁니다. 3분의 1이 보호가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 상생법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70% 정도에서도 대기업의 진출을 조금 제약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이름하여 조정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것이 처음에는 제조업 간에만 적용이 되다가 작년 7월부터 지난 10개월간 지금 유통업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제도가 굉장히 강도가 강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숫자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홈플러스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지난 9개월 동안에 입점을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제가 알기로 한 7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조정제도를 거쳐서 허가 난 것이 한 12개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이라면 100개를 신청하면 한 열 몇 개 정도가 신청이 되고 나머지는 보류가 되거나 불허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도 굉장히 시장접근을 아주 효과적으로 봉쇄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15년 전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유통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붙

였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아주 큰 폭의 개방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통시장 내지는 그 500m를 조닝으로 하고 그 밖에도 아주 효과적인 조정제도를 통해서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전국의 상권을 규제 밑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에 대외적으로 약속을 했던 것과 크게 괴리가 생긴다는 것이 제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왜 괜찮고 상생법은 뒤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다 시장경제를 하고 있고 또 자본주의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꼭 경쟁에서 이긴 잘난 사람만 잘 먹고 잘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경쟁이 격화되면서 조금 사회적으로 약자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제가 설득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법은 제가 진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개정안의 요체가 딱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조정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 지금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지금 이게 새로운 법이 아니고 지금 법이 있고 이미 조정제도는 지난 9개월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맹점도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 줄게' '조정해야겠다'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우리가 WTO에 가입을 하면서—그것도 15년 전입니다—아무런 조건 없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의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주 깨끗하게 개방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어떤 제3국이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법령 자체를 챌린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법령이 어떻게 운영되어서 어떤 결과가 있어서 그것이 시장접근을 어떻게 막았느냐 하는 현실을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의 개정안은 프랜차이즈라는 것을 조정하겠다고 딱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 자체가 우리의 양허하고 너무나 지금 위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적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대외적으로 어떤 마찰이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책을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 왔던 그 정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까지 가는 것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이게 필요하다면 저는 그렇게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발전을 해 오면서 했던 것은 어느 정도의 보호는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시장에는 상당한 정도의 경쟁적인 요인도 계속 격려가 되고 촉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발전되어 온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70%의 유통상권에서 굉장히 강한 제도의 조정제도를 두는 것은 과연 우리가 취하고자 있는 시장경제의 원칙과 어느 정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과의 균형에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제가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홍일표 위원 지금 최 장관님께도 묻겠는데 유통법의 적용 대상과 상생법의 적용 대상이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완전히 구별됩니다.

○홍일표 위원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적용 지역이 다릅니다.

○홍일표 위원 통상본부장님,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왜 지경위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우리 직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과부적이었던 것으로 제가……

○홍일표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그런 것을 관철하고 거기서 충분히 더 토론하고 그랬어야지 이것을 법사위에 넘겨 놓고 이제 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게 과연 적절한가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 1차 토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법을 그냥 통과시키고 운영상 어떤 묘미를 살려서 최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인데요. 법 자체가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면 논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 자체에 '프랜차이즈는 조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년 전에 프랜차이즈는 깨끗이 개방을 하겠다고 한 것과 명백히 위배가 되는 겁니다.

○홍일표 위원 그런 명백한 차이점을, 위반점을 왜 상임위에서 관철을 못 시키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만일에 이것을 그냥 통과했을 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사례는 뭐가 있어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보통 국가 간에 이런 통상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이 되면 끝까지 분쟁을 다퉈야지요. 그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소 또는 결정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되면 잘못된 제도는 바로 고쳐져야 되는 것이 결정의 효과입니다.

○홍일표 위원 바로 고쳐져야 된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경우에 따라서는……

○홍일표 위원 어디 제소하거나 국제기구에……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WTO 패널에 제소를 하는 겁니다.

○홍일표 위원 WTO 분쟁재판소에 제소를 한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그 제소에 따라서 패널에서의 결정이 있으면 결정에 따라서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지요.

○홍일표 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고쳐지면 어때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WTO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일한 대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 뒤에 아직 발효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개방도를 높인 한미 FTA도 있고 또 비슷한 한·EU FTA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세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서비스 부분에서도 WTO보다 훨씬 플러스적인 개방을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상대편도 같이 약속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먹을 게 있다 하고 서로 주고받은 협상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도, 지금 한미도 한·EU도 언젠가는 발효가 되어야 되는데요. 발효가 되는 시점에 가서는 지금 통과될까 말까 하는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합의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요.

○홍일표 위원 그러면 상대방 국가에도 우리와 똑같은 것을 허용하는 식으로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다면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재협상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이전에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통은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비스에 식당도 있고 운송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통이 서비스에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시장에서 굉장히 유통업에 공세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데도 우리가 굉장히 유통업 개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는 이미 이것을 개방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시장의 개방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공세적으로 나가면서 우리 시장에는 기왕에 약속한 것도 뒷걸음질하면서 제약을 강하게 하는 그런 이율배반의 상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일표 위원 하여간 이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넘어온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 두 법이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차적인 처리를 주장하시는데 하여간 저로서는 재래시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중소 수퍼마켓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위원님,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개정안이 아까 올라온 대로 프렌차이즈를 넣느냐, 마느냐 하는 거고요.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있는 법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제도는 지금 계속 가기 때문에. 또 그 제도가 지난 9개월 동안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마찰을 더 강화시키는 쪽의, 어떻게 좀 해 볼 방법이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를 지속하면서 좀 시간을 갖고 보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유선호 우윤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우윤근 위원 조승수 의원님, 통상교섭본부장, 뭐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마는 1년간 끌어 왔고, 절차적으로 제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해요. 지금 못 다한 얘기를 마치 처음으로 하는 것처럼 이 법사위에서 다 말씀하시는데, 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지금 충분히 논의된 것 아닙니까?

○조승수 의원 예, 충분히 논의……

○우윤근 위원 그때 협력관이 왔던가요, 지경위에 외무부에서? 그분이 뭐, 말씀을 못 알아먹어서……

○조승수 의원 다자통상협력관인가요? 다자협상협력관인가…… 그 외교부 관계자들이 법안소위에 와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지금 통상교섭본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계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깨끗이, 전면적으로 개방을 했다고 하셨지만 과일과 채소·생선이라는 구체적인 품목으로 영업 품목을 유통 부분에서 개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품목도 개방했다는 말씀입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아닙니다. 그……

○우윤근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승수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 지경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렇게 후퇴시켜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영업 품목에 대한 제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외에는 우리가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도 가능한데 그 부분도 지금 정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가지는 여러 가지 불리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생법의 사업조정 대상으로 기대를 해서 통과시켰던 것이고요.

사업조정 대상으로 지금 효과를 본다고 하시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담배하고 쓰레기봉투만 판매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윤근 위원 조 의원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충분히 다루어진 것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또 재탕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조금 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논의됐다고 봅니다, 제가. 1년 넘게……

○조승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정부 당국하고, 그렇지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지경위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여기는 원래 체계와 자구를 논의하는 소관 상임위입니다마는 그런저런 통상 마찰 같은 것 충분히 논의된 것 맞지요? 충분히 논의한 것 아닙니까, 고려하고.

○조승수 의원 예, 충분히 논의했을 뿐더러 지난……

○우윤근 위원 다음으로 최경환 장관님,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또 상생법 이것에 의해서…… 어느 게 시급성을 다투느냐? 저는 똑같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분들 있지요? 재래시장, 그 관계인. 그러면 상생법으로 인해서 보호받는 분들은 영세한 슈퍼마켓 또 영세상인들 아닙니까? 어느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똑같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똑같이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지금……

○우윤근 위원 보호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이제……

○우윤근 위원 시급성으로 따지자면,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런데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피해 또 어려움 이 강도를 따지면 사실은 재래시장이 훨씬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슈퍼마켓보다는. 그러나 둘 다가 보호 대상이 돼야 된다고……

○우윤근 위원 아니,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다 절실하더라고요, 제가 만나 보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렇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우윤근 위원 장관님이 지금 조율을 좀 하고 오셨나?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아닙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우윤근 위원 아니, 자기들 입장에서 다 절실하더라고, 슈퍼마켓도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통과되지 못할 만큼의 장애 요소가 상생법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긴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지경위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안 했다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서, 체계·자구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 그러면 법사위원회에서 당연히 논의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충분히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1년 넘게, 2년 가까이 논의됐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소관 상임위의 전문적인 논의가 있었고 지난번 원내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원내대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원내수석, 원내대표가 지경위 간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법 충분히 조율했냐?', '정부 당국자하고 충분히 조율했다'…… 우리 김기현 간사가 그래서 이제는 합의해도 좋다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합의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것 통과하자, 이번 4월 국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다……

마지막으로 극히 현실적입니다마는 지금 하나만 통과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본회의가 오늘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4월 국회가 사실상 오늘 마감됐습니다. 6월 국회가 열릴지, 물론 야당은 5월 임시국회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야 4당과 함께. 이 문제를 더 논의하자……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 이 유통산업발전법만 통과된다고 해서 유의미하지는 못한 단계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지금 2개가 통과되지 않으면, 또 통과되기 위해서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1개 통과해서 본회의에 통과할 전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

새롭게 임시국회를 소집하거나 6월 예정된 임시국회가 되기 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의미한 걸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좀더 논의한다면, 2개를 본회의에 계류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또 협상을 하고 보완책이 있으면 본회의를 소집하고 다시 법사위를 소집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시국회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호 우윤근 위원 말씀은 지금 그냥 전체회의에 두 법안을 함께 계류시키고 오늘 의결하지 말자 그런 취지시네요?

○우윤근 위원 의결해도 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예,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통상교섭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외교통상부 주장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외교통상부 주장이 이 상생법을 반대하고 있다면, 상생법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도 통상 문제가 당연히 될 것이고, 오히려 저는 유통산업발전법보다도 상생법이 통상 문제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데는 전부 다 조건부 등록제로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완전히 규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상생법 오늘 나와 있는 대안은 이미 다 운영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 중에서 대상 가맹점에 대해 SSM을 새로 추가시키는 것이지요, 맞지요? 이것 맞는 것이지요, 법 보면?

자, 그런데 왜 외교통상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은 통과시켜도 되고 이 상생법은 통과 안 된다는 겁니까? 이게 논리에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맞다 안 맞다, 안 맞으면 뭐가 안 맞다, 짧게,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통상 문제가 될 때는 늘 두 가지입니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과 그 운영의 투명성이 통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통산업발전법도 500m 이런 것들이 쉽게 설득해 내기는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500 이렇게 해서 조닝이 딱 되면 그 운영이 굉장히 투명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조정제도는 말이 조정이지 사실은 그 절차가 굉장히, 투명하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난 9개월 동안 운영이 되면서 시장 접근이 상당히 제약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덧붙인다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에 노출이 된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경쟁 상황을 어느 정도 제약해서 보호를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상생법은 그래도 그나마 상당히 경쟁을 해 볼 만한 그런 비슷한 상인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고 개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 보호의 정도는 상당히 어느 정도의 균형

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이 법 통과하는 것에 대해 가장 신경 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과 EU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제가 기업체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오늘 까놓고 합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형태의 편법으로 SSM으로 다 바꿔 가지고 골목상권 진입시키려고 다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일시 사업정지가, 개별 단체든 지자체든 일시 사업정지를 다 하면서도 그것을 무시해서 지금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어요. 골목상권에…… 예전에 롯데마트, 롯데슈퍼 큰 것은 다 들어와 버렸고 이제는 골목상권마다 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 무시하고 막 들어오는 삼성테스코, 이것 영국 자본이 투자한 대형 유통자본 맞지요? 지금 삼성이 EU 내세워서 중소 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딱 까 놓고 하면 이 기업체 딱 하나, 삼성이 EU 내세워 가지고 WTO 위반이다 하는 것……

지금 EU하고는 FTA 체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체결되지도 않은 한·EU FTA 내세우면서 이 법을 반대하는 겁니까? 삼성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EU FTA 추진하는 통상교섭본부장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안 하려는 것이에요, 이거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말씀이 지금 사안하고 관계없이 조금 많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어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것은 제 양심을 걸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EU FTA는 지금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이 맞고요. 발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이 잘 발효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하면서 서명까지 한 거기에는 합의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발효되기도 전에 다른 어떤 조치를 국내법을 통해서 하면 저의 신뢰 문제를 떠나 가지고 국가의 신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 문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저쪽도 정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굉장히, 비준 과정에서 불필요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이 될 가능성을 제가 상당히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이춘석 위원 저는 지경위에서 여야가 다 합의한 법이 오늘, 여야 합의로 대표적으로 서민을 위한 법이다 하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광고한 법이 하루 만에 법사위에서 딱 제동 걸리고 지식경제부장관 입장 애매하게 바뀌고, 이것 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서는 애매하게 10명을 도와주고, 10명을 구출하고 3명을…… 13명을 죽이고 10명을 구하면 어떤 게 이익이냐 이런 궤변 아닌 궤변 펴고, 13명 다 구할 수 있으면 다 구해야지 왜 10명만 구하고 3명은 죽입니까? 그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유통산업발전법만 통과되고 상생법은 통과되지 않는다, 두고 보자…… 이것 다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통시장만 보호하고 골목상권은, 슈퍼마켓 상인들을 다 죽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한나라당도 잘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선호 이한성 위원!

○이한성 위원 이한성 위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 법사위에 와 가지고 정말 체계·자구 수정 하는 기능에서 아주 어려운 역할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한나라당도 가능하면 이 2개 법안에 대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통상교섭본부장께서 고뇌에 찬 호소를 하기 때문에 약간 검토하는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지레 그냥 본회의가 날아갔으니까 5월 국회로 넘기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나라당이 마치 다 제동을 건 것 같이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어 가지고 아주 우리도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서민들을 생각하고 함께 잘사는 우리 화목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행을 많이 해 보지는 못했지만 일본과 미국, 유럽을 여행해 보면 일본은 보니까 교토의 니조도오리 전통시장이라든지 도쿄의 우에노공원 근처의 재래시장, 굉장히 활발하고, 물론 그것들은 워낙 큰 도시 옆이니까 우리나라 동대문시장

옆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골도 이렇게 재래시장이, 하도 전통을 존중하는 국가가 돼서 그런지 전통시장도 있고 또 구멍가게도 있고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렇지만 미국은 대형슈퍼로 바뀌고, 아예 구멍가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요? 유럽도 가 보니까 구멍가게를 찾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구멍가게는 없이 약간 특화된, 개별 상점이지만 아늑한 분위기에다가 또 고급 상품을 진열해 가지고 특화된 그런 골목 상점…… 골목 상점은 볼 수가 없습니다.

벌써 수백 년 전통에다가 자생력을 갖춘 기업형 골목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럽하고 우리나라 사정은 많이 다르고 그러면서 일본은 좀 우리하고 비슷한데 과연 일본은 어떻게 FTA를 대처하는지 그것을 우리 통상교섭본부장님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일본은 재래시장 구멍가게가 우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구미하고 FTA를 할 때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일본은 아직 우리가 했듯이 그런 큰 나라하고 FTA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통상 이슈로 일본이 대전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법안을 한때 운영을 하다가 미국하고 통상 문제가 되면서 그것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고쳤습니다.

고쳐서 지금은 그 법의 이름이 상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相)'자에 '도울 조(助)'자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 199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조정이 들어가서 조정이 된 케이스가 18건입니다. 18건이 조정 대상이었고 나머지는 입점이 상당히 자유롭게 허가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한성 위원 그런 경우에도 일본 전통 재래시장, 골목시장에서는 저항이 없습니까, 일본에서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제가 일본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한성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업조정을, 조승수 의원님 반론을 들어보면 대형 슈퍼마켓에서 사업조정을 하는 것이 겨우 쓰레기봉투하고 담배 못 팔게 하는 정도로 사업조정을 해 가지고 그게 무슨 사업조정이냐, 거의 모든 분야 99.9%는 다 풀어 놓고 사업조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중기청은 어떻습니까? 사업조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제도 자체는 사실은 정부 계획 없이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 과정에서 양측이 다 합의하에 품목조정이나 이런 것을 서로 다 합의를 하고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양 당사자가 그렇게 형식적인, 대기업은 그냥 쓰레기봉투하고 담배만 팔지 않을 테니까 사업조정하자, 이렇게 하는 사업조정도 정부에서 간섭할 수 없습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그것은 계약과 같은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고요, 한쪽이 이의를 제기를 해서 결국 중기청까지 와서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조정 권고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조정 권고의 강제 이행력이라든지 또 이행을 안 했을 때 벌칙을 부과를 하면 이게 통상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법 개정을 통해서 없애 놓았습니다.

○이한성 위원 사업조정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결과적으로도 골목상권이 망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조승수 의원님이나 다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부족해보이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중기청장님?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사업조정제도가 작년 7월부터 이행이 된 이후로 사실은 그 전까지 SSM의 무분별한 출점이 상당히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에 거의 2배로 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조정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상당히 출점 속도가 많이 지연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149건이 조정신청이 된 것 중에서 한 반수 이상이 조정을 통해 가지고 다 해결이 되었고요, 나머지 반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

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계류 상태인 한 70건 정도가 사실은 합의를 해 가지고 일부 품목조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일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입점 유예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만하게 출점 속도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성 위원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하면 영세한 상인들은 또 어차피 나중에 수입이 떨어지거나 해서 폐업을 하게 되고 선진국형으로 가기는 갈 텐데 지금 이렇게 FTA를 급작스럽게 체결하면서 충격이 심하고 미처 골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타격을 입고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두 가지 어프로치(approach)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게 한시적이나마 3년 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제한은 최소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하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 자체의 자생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대화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좀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작년 7월부터 운영을 계속 해 온 그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SSM 쪽에서 요청하는 제도개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히 반영을 해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사업조정을 하는 것도 물론 당사자끼리 계약의 원리에 따라서 또 경쟁 원리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것이 좀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절차화되고 또 이해관계인이 좀 골고루 참여해서 상생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업시간이라든지 취급품목이라든지 또 무슨 영업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한한다든지 해서 상생하는 방법을 좀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그런 것이 설득이 되어 가면서 두 가지 법이 실행되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나라당도 그런 전제하에서 우선 유통산업법은 통과를 하고 가급적이면 같이 세트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만 또 긴급하게 통상본부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한두 달 차이로 하려고 그러는데 마치 한나라당이 다 막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진다면 매우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기청이나 지식경제부에서도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 가면서 우리 영세상인들의 생계도 걱정해 가면서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철래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노철래 위원 장관님, 중소상인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 진짜 도시 지역의 소상인들 보호 대책이 확실하게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지금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중기청장이 보고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도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SSM을 규제한다고 경쟁력이 다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스마트숍을 한다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강화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급격히 SSM이 진출하면……

○노철래 위원 그 경쟁력 강화를 유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어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이 중심이 되어서.

○노철래 위원 예를 들어, 그 다양한 사업을 한번 열거를 해 보시지요. 골목의 소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다양한 방법 중에 예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먼저 물건을 싸게 납품을 받기 위해서 공동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대규모로 구매를 해서 그것을 분할해 가지고 사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것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개별 가게별로 '나들가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가게 예를 들어서 한 2000개 정도를 금년에 지정을 해서 지정되어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간판서부터 조명이라든지 또 경영하는 노하우 이런 교육도 다 시켜 주고요, 그렇게 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면 그 가격경쟁에서, 지금 얘기하는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대형마트하고 경쟁이 가능합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거기하고 경쟁을 하도록 공동구매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글쎄 갖추면 가격경쟁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가격이 싸니까 대형마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중소상인이 죽고?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상당수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철래 위원 상당수라고 말을 하지 말고……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중소 상인들이 다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한 표현이지만 사회악, 다 실업자,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골목슈퍼나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구멍가게 다 때려치고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 백수, 아무런 자기 직업도 없고 그간 자기 생계를 유지해 주던 가게도 없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사회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든 그런 서민층으로 전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 가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층이.

그런데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제도적 근본적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법을 이렇게 좋게 만들고 우리 법사위원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사례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이 있는 민족이라서 전통적으로 골목시장에서 서로 돕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예를 들어 이쪽 신발가게다, 이쪽은 무슨 과일가게, 이쪽은 정육점 이게 서로 돕고 내가 고기 필요하면 정육점 가서 사먹고 이런 식으로 상부상조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죽여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물론 전통시장, 재래시장도 중요하지만 도시상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유통산업발전법보다도 제가 볼 때는 상생촉진법이 더 심각한 문제고 도시 빈민층을 양산해 내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만 근본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법 같이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거 구분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상생법을 개정하려는 부분은 아까 일부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조정제도 자체가 국제규범에 위배가 된다 하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왕 기존에 적용하는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을 프랜차이즈점까지 확대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규에 위배되는 문제 여부는 차치를 하고라도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사실은 지금 사업조정 신청에 많이 계류되어 있는 건 중에 상당수가 SSM으로 출점을 하려다가 가맹점으로 전환을 하면서 입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무늬만 가맹점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SSM 효과를 갖는 그런 출점 자체를 상당히 경계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SSM에 적용하던 사업조정제도 자체를 그러한 가맹점에도, 사실상의 대기업의 지배 상태에 있는 그런 가맹점에도 적용을 해달라 하는 것을 개정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급한 그런 법안개정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예, 됐습니다.

통상본부장님!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노철래 위원 지금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 가격경쟁에서 경쟁력이 생기도록 구매제도를 보완을 해 줘 가지고 공급을 해 줄 경우 WTO나 여타 통상 문제, EU하고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런 형태의 국내적인 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철래 위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지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오히려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물류센터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두 법을 같이 동시에 통과시켰을 때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런데 지금 상생법의 개정 취지는 그런 물류센터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노철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는 골목상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놓고 보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EU나 여타 FTA 이것은 아직 발효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우선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 상권, 도시 소상인 상권을 죽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법이 같이 통과되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런데 FTA는 아직 발효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미 WTO는 우리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기구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지난 15년 전부터 아주 지위가 독특한 회원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양허를 하면서 프랜차이즈는 개방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발효된 지가 15년이 지난 그런 우리의 약속입니다.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문제는 여전히 있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문제는 어떤 것이든 다 안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법안을 같이 통과시켜 가지고 앞으로 문제되는 것은 또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호 주광덕 위원, 말씀하세요.

○張倫碩 委員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유선호 예.

○張倫碩 委員 이 법을 가지고 여러 차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자리를 자꾸 맴도는 것 같습니다. 두 법을 같이 처리하느냐 순차적으로 처리하느냐 그런 얘기 같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상생법을 처리하지 말자는 위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통상교섭본부장님!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張倫碩 委員 상생법은 그러면 처리하지 말고 폐기하자는 얘깁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정안은 프랜차이즈를 추가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도는 이미 있고요, 시행되고 있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추이를 봐서 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張倫碩 委員 그러면 그런 얘기를 지경위에 가서 좀 제대로 했어야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이 프랜차이즈가 지금 들어간 것은 막판에 들어가 가지고요, 제가 몰랐습니다.

○張倫碩 委員 아니, 막판에 들어가도 정부로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지경위 소관은 우리 지경부가 부처……

○張倫碩 委員 아니, 그러나 통상과 관계있는 거면 관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법사위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경위에 있는 많은 위원님들도 법사위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좀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처리를 하지 말자는 위원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유통산업발전법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살려줘야지요. 그래서 의견이 모아진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실 것은 처리하시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선호 예.

○張倫碩 委員 또 대·중소기업 상생법도 조금……

저는 사실 통상교섭본부에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법사위에 있어 보면 정부가 부처 간 의견을 통일해서, 조율해서 국회에 가지고 와야 여야가 뭐 어떻게 해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사위에 있어 보면 흔히 그냥 부처 간에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여당에 몸을 닫고 있는 저로서는 불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 하고, 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어떻습니까? 언제쯤, 딱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멀지 않아서 처리를 하면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님?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사실 이 법의 소관 부서는 지경부입니다.

○張倫碩 委員 물론이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제가 협의

를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협의를 해서 또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 간에, 물론 일부 같이 처리하자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은 의견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다 처리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처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협력법대로 또 우리가 논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호 주광덕 위원 먼저 하십시오.

○주광덕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으로는 지금 장윤석 간사님이 말한 것과 같은 취지로, 지금 어차피 이런 논의를 하는데 모두가 합의되는 것을 먼저 처리하고 또 이 논의를 하는 것도 우리가 법사위를 진행하는 방법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틀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지식경제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님 계신 자리에서 사실 유통산업발전법뿐 아니라 상생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이것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장님께서 이런저런 사유로 고심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저로서는 통상교섭본부장님의 그런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논리도 전개했습니다.

제가 통상교섭본부장님께 몇 가지를 한번, 이 상생협력법안에 대한 우리 논의를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생법 중에서 사업조정 대상에 체인점포를 포함시키는 이 조항 외에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그런 조항 자체가……

○주광덕 위원 아니, 이번 상생법의 개정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중에서 지금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안 32조1항에 대해서만 지금 이의가 있으신 거잖아요? 나머지는 이의가 없는 거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것 말고는 개정안이……

○주광덕 위원 예, 일단 제가 정리를 하려고요.

그러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에는 직영점형과 프랜차이즈형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른 형태는 없습니까? 두 가지 형태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직영점, 가맹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직영점이냐, 프랜차이즈형이냐.

그러면 그 중에서 직영점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제도가 조금……

○주광덕 위원 아니, 굳이 두 가지 점포형을 구별하면?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아까 우리 중기청장님이 말씀드린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간 운영되는 제도의 투명성 같은 것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도 프랜차이즈형에 대해서 15년 전에 이런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어떤 조건 없는 개방을 한다라는 것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직영점은 해당이 안 되고 프랜차이즈형에 대해서 문제 삼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직영점이냐 프랜차이즈형이냐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직영점은 말 그대로 직영이니까요, 100% 소유가……

○주광덕 위원 대기업이 100%……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직영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가맹점은 어떤 사적인 계약에 따라 가지고 지분의 분할을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러면 이쪽에서는 뭘 주고 저쪽에서는 어떤 것을 할 거라는 분담……

○주광덕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까 거론됐던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형, 우리가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형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 상인하고 지금 지분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게 사적 계약이지요.

○주광덕 위원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흔히 말하는 본사가 90%를 갖고 운영하는

사람이 10%를 가질 수도 있고, 7 대 3일 수도 있고, 5 대 5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형태……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형태를 지금 이 법안은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혹여 본사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포 상인 간의 그런 지분 관계가 어떻든 간에 단 1%라도 본점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다 사업조정 대상에 지금 포함시키는 게 법안의 내용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51%라는 그런 퍼센티지가 나오……

○주광덕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 보는 거예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51%라는 지분……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과반 이상을 본사가 지분을 갖는 것,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주광덕 위원 그리고 아까 사업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이 조정제도가 9개월간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사실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 간에 상당수가 불만족도 많았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주광덕 위원 왜냐하면 어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조정제도가 있지만 이것이 강력하지 않다 그런 문제도 제기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것은 제가 잘, 처음 들었습니다.

○주광덕 위원 최소한 이것을 지금 문제 있다고, 통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업조정제도가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지 그것을 본부장이 잘 알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나름대로 파악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광덕 위원 사업조정제도가 강제력이 없습니다, 아까 중기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당초에 여러 가지, 그동안 논의가 있어서……

○주광덕 위원 생각보다 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조정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외국과의 통상관계에 있어서 이게 무슨 강력하게 진입을 완벽하게 막기 때문에, 블로킹하기 때문에 통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오늘 가셔서……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것은 제 이해하고 조금 다릅니다.

○주광덕 위원 글쎄, 사업조정제도가 어떤 건지, 법안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내용과 효력이 어떤지를 한번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상생법이 지금 개정이 안 된다 해도 사업조정제도는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다만 대상에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인데.

그러면 현재 법이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 법의 입법 취지라고 그럴까요, 법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는 제조업에 국한돼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주광덕 위원 결국 이런 것 아닙니까? 대기업이나 대형마트같이 이렇게 자본이 거대한 사람이 대규모로 경제주체 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자본이 대형점포로 오는 그 경제주체와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소규모로 또 소자본을 가지고 하는 경제주체 간에 너무 불균형이다, 말하자면 이 시장경제에서 자유경쟁인데 자유경쟁을 하기에는 이 두 경제주체 간에 너무 불균형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서 경제주체 간의 불균형 이런 것을 해소하고 균형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민주화 내지, 그런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제도의 목적 아닙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이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만 첫 번의 대상에서 직영점과 프랜차이즈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법을 전공한 본 위

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기업이 직접 들어오는 것 못지않게 직영점으로 오는 거나 그 지분의 51% 이상을 본사가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형은 이미 이 법에 있는 사업조정제도의 법의 목적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저는 법률가의 양심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 없는데 새로 이것을 도입하자고 그러면 그런 문제 제기가 있지만 기왕에 이런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은 대자본에 대해서 사업조정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고 9개월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법에서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직영점과 프랜차이즈형이 지분의 51%를 그 본사가 가지고 있으면 기왕의 입법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기존의 전통재래시장이나 전통 점포의 그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못 들어오는 거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맞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통상본부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재래시장이 경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재래시장의 어떤 경계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경계로부터 500m에 다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유통산업발전법이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주광덕 위원 그러면 이 500m 안의 한 350m 지점이나 300m 지점 어느 골목에 상가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이 상생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골목상가는. 그런데 500m 벗어난 사람은 못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상생법 아니면?

그러면 300m에 있는 이 골목상가와 더 이상 밖에 있는 골목상가 간에 어떤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래서 500m……

○주광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기왕에 있는 상생법의 입법 목적과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이해하고 지금 말씀드린 500m 그 경계 내에 있는 점포와 그 밖에 있는 점포와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형평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상본부장 입장에서 상생법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법안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500m인데요.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문화성, 전통성, 역사성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게 반드시 상업적인 고려가 아니고 보호될 가치가 있다, 별도의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이 거기에 깔려 있는 철학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500m를 붙이는 것은, 그러면 왜 1㎞가 아니고 500이냐, 왜 300이 아니고 500이냐, 이것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500m 밖에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보존하자는 그것에 논리적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기왕에 있는 상생법에 사업조정제도가 이런 대자본, 대기업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 사업조정제도를 통해서 사업 주체 간의, 경제 주체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자 이것 아닙니까?

그 법의 목적 안에 지금처럼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지분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형에는 이미 기왕에 있는 법안의 입법 취지에 포함된다, 저는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경쟁에 노출된 약자를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보호를 하자, 경쟁을 좀 제한적으로 하도록 상황을 새롭게 만들자는 것에는 같은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을 어느 나라가 운영을 하면서 다른 나라가 '그 법이 문제가 있다'고 WTO에다 제소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는요 통상 보면 그 법 자체, 그 입법 취지 내지는 목적을 문제 삼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얼마든지 분쟁을 하면서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광덕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그러한 논리적 근거와 입법 취지, 입법 목적이 있는 점을 각별히 고려하셔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법안을 바라보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하는 의미입니다.

○손범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또 하시려고요? 그만 하시지요.

○張倫碩 委員 의결해 주십시오.

○이춘석 위원 같이 상정됐으니까 같이 해 주십시오.

○손범규 위원 지금 논의의 과정을 죽 보면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다 알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금 어느 위원이고 다 통과시키자는 거고 그리고 지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통상본부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발짝 나가야 될 사람한테 한 발짝이라도 나가게 해 줘야지 유통산업발전법도 통과 안 시켜 버리고 이 판을 완전히 깨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아무 이의 없는 것은 우선 통과시켜 놓고 보자는데 그것을 왜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우선 유통산업발전법 의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선호 지금 상황이요, 우리 위원회 결단이 2개를 같이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또 그것을 분리해서 처리하기 위한 결단도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전체회의에 계류해 두고 내일 다시 한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표들 간에 이 법을 둘러싸고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우리가 상임위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정도로 하고……

○張倫碩 委員 내일 해 주세요. 오늘 해 주셔야 되는데 내일 해 주세요.

○위원장 유선호 오늘 너무도 열심히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사실은 좀 종료가 되면……

조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趙舜衡 委員 아니, 지금 북한인권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張倫碩 委員 참,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북한인권법 지금 몇 차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윤근 간사가 합의를 안 해 주고 어디 가 버리고 없네요.

○위원장 유선호 내일……

○張倫碩 委員 아니, 북한인권법에 무슨 알레르기 있습니까, 우윤근 위원?

○위원장 유선호 내일 그것도 상정해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내일 우윤근 간사 붙잡고, 내일 북한 인권법을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호 제가 사실은 오늘 마지막 회의인줄 알고 인사말씀까지 준비했는데 내일 한 번 더 보는 게 좋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지금 북한인권법이 온 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 오늘 우리 처리한 법안 제가 얘기 좀 하려다가 못 했는데 어저께 회부됐어요. 대부분 법안이 어저께, 하루 전에, 사실은 5일 전에 해야 되는데……

어제 몇 시에 회부됐어요? 이게 전문위원 누구 담당이에요? 어느 전문위원 담당이에요? 몇 시에 왔어요, 어제 몇 시에?

○전문위원 이영진 문광위 법안은 한 2시, 3시쯤에 왔습니다.

○趙舜衡 委員 그것 봐요, 어제 오후에 하니까 24시간도 안 되잖아요.

그러시고요.

조 의원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쭤볼게요.

지경위 대표해서 나오신 입장이시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2개 법안 그냥 오늘 처리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시지요?

○조승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통산업발전법만 처리한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사실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趙舜衡 委員 그러니까 조 의원 개인 입장이 아니시고 지경위 전체 입장이시지요?

○조승수 의원 예, 제가 대표성을 가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의결할 때는 그 방향으로 입장을 가지고 의결을 했습니다.

○趙舜衡 委員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부 측 의견 많이 듣고 질의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요,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장시간 했는데 이제 정부 측 의견은 더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는 국회 아닙니까? 우리가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우리 법사위가 할만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유선호 예, 옳은 말씀입니다.

○趙舜衡 委員 체계심사 문제도…… 저도 사실 처음에는 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할만

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부 측 의견 다 들었고요. 정부 측에서는 의견이 정리도 잘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경위가 이 법안에 관한 한 주무위원회 아닙니까? 주무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같이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법사위원회는 그것을 존중해야지요. 물론 저희가 할 책임도, 의무도 있지만 할만치 다 했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유선호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주영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이 단계에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보류할 그럴 권한도 없고……

○위원장 유선호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이주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논의를 다 지켜보면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지경위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의 고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승수 의원님께서 통상교섭본부장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던가요?

○조승수 의원 사실은 저는 이 문제……

○이주영 위원 지경위에서 논의할 당시에 직접은 못 들으셨잖아요?

○조승수 의원 예,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주영 위원 무슨 파견관인가 뭐……

○조승수 의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실에서 TF팀 구성이 되어서 두 달 가까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21일 날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때 다자통상협력관도 와 계시고 지경부 관계자 다 배석한 가운데 총리실에서 정리하기를 지경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이번에는 통과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주영 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건 좋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씀은 처음 들었을 것 아닙니까?

○조승수 의원 예, 직접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이주영 위원 이해가 되시던가요?

○조승수 의원 아니요.

○이주영 위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조승수 의원 저는 아까도 제기를 했지만 내용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아직 자료가 충분치 않아 가지고 판단하기가 조금 이르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조승수 의원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상생법에서 현재 사업조정제도 자체가 사실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 법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2월 달에 더 강화된 안을 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재로도 직영점인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가맹점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지, 그것만 통상의 분쟁 핵심으로 꼽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래서 오늘 처리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통상교섭본부장님께 저희들이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EU FTA가 지금 문제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WTO 협정도 문제입니다.

○이주영 위원 WTO 협정도 문제고요.

그러면 저희 법사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이주영 위원 내일 논의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오늘 밤새 준비를 하셔서라도,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그러니까 무슨 양허, MOU가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 협정의 일부입니다.

○이주영 위원 협정의 일부 그 협정문하고 언제 있었는지 또…… 그것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사업조정하고 사이에 어느 정도 저촉이 될 수 있는지. 아까 주광덕 위원님께서 많이 역설을 하셨는데 그런 점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또 FTA 쟁점사항은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합의된 내용들도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 문제는 아주 극히 일부분일 것 아닙니까? 또 해당되는 나라도 영국이라든지 EU 이런 여러 나라 중에 아주 국한된 특정 국가, 아주 일부분일 텐데 그런 나라들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한·EU FTA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기초 자료까지 다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팩트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이주영 위원 그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노철래	박민식	박영선	박지원
손범규	우윤근	유선호	이주영
이춘석	이한성	장윤석	조순형
주광덕	주성영	최병국	홍일표

○위원 아닌 출석 의원(4인)

김용구	변재일	우제창	조승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전문위원	이금로
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이영진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차장	임인규

○정부측 참석자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다자통상국장	김기환
법무부장관	이귀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환경부장관	이만의
노동부장관	임태희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양성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네트워크정책국장	황철증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장	박일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이기선